

두산인문극장 2024

권리

Rights權利

권리  
RIGHTS

두산인문극장

2024

권리(Rights)

# 두산인문극장

2024

권리(Rights)

## 퍼낸 날

2024년 8월 23일

## 제작

두산아트센터

## 기획

두산아트센터

이음

## 지은이

송지우

정익중

김도현

이준희

정희진

박주연

권윤경

전치형

'두산인문극장 2024: 권리'는 2024년 4월 8일부터 7월 13일까지 두산아트센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 강연록의 저작권은 두산아트센터와 저자들에게 있습니다.

## 권리(Rights)

인권에 대한 일반적인 전제는 인간으로서의 권리가 태어난 순간부터 우리에게 결부되거나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다. 당연한 것 같지만, 권리는 오래된 이야기가 아니다. 권리는 어디서 왔는가?

권리는 인간과 다른 존재들이 원래 소유했던 것일까? 아니면 다른 누군가로부터 양도받은 것일까? 만일 권리가 거래되거나 누군가로부터 양도받을 수 있는 것이라면 동물이나 로봇, 또는 바위 같은 비인간 존재들에게 권리를 양도하지 못할 이유는 무엇일까?

실제로는 권리가 없는 존재들이 권리를 갖는 방향으로 역사는 흘렀다. 고대 그리스에서 권리를 가진 사람들은 남자 시민이었다. 오랜 시간이 흘러 노예가 해방되고 여성의 권리가 회복되었다. 소수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시간은 흐른다. 권리를 가진 인간이 늘어나는 것이 역사의 흐름이었지만 권리를 가진 인간의 욕망은 지구의 시간을 빠르게 흐르도록 만들기도 했다.

그 이전의 궤를 벗어난 기후, 그 변화를 다그친 것은 역설적으로 권리를 회복한 인간들의 집단적인 욕망이었다. 인간의 권리만을 주장하다가 인간이 멸종에 이를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이 인간이 아닌 것에겐 아무런 권리도 없는가를 질문하도록 만들었다. 동물의

권리, 식물의 권리, 나아가 인간이 만든 인공물과 사물의 권리까지 고민하면서 인간의 행동을 결정해야 한다는 생각이 자리 잡아 가고 있다.

권리는 투쟁의 산물이다. 권리의 확장은 나눔의 과정이고 갈등이 따르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결론은 화해와 평화여야 한다. 인간은 인간이 아닌 것들로 이 권리를 확장하는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싸움이 권리의 확장으로 결론이 나와 하는 이유는 그것이 권리를 가진 인간이 모두 함께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인류세의 인간이 비인간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그들과 권리를 나눌 때 지구를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두산인문극장 2024

두산인문극장은 인간과 자연에 대한 과학적, 인문학적, 예술적 상상력이 만나는 자리다. 상상은 현실에 갇혀 있다. 자유롭게 상상할 수 있다는 것은 착각이다. 대부분의 상상력의 한계는 물질문명이 제공하는 테두리에 막힌다. 그 테두리를 확장하는 모험을 하지 않고 새로운 상상력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길이 없다면 새로이 길을 내야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두산인문극장은 새로운 상상력의 원천이 될 미지의 땅에 길을 내기 위한 여정을 계속하고 있다. 2013년 ‘빅히스토리: 빅뱅에서 빅데이터까지’를 시작으로 2014년 ‘불신시대’, 2015년 ‘예외(例外)’, 2016년 ‘모험’, 2017년 ‘갈등’, 2018년 ‘이타주의자’, 2019년 ‘아파트’, 2020년 ‘푸드’, 2022년 ‘공정’, 2023년 ‘나이, 세대, 시대’를 지나 올해는 ‘권리’로 관객들을 만났다.

**FLP  
RIGHTS**

## 두산인문극장 2024: 권리(Rights)

### 공연

4.30~5.18	연극	〈더 라스트 리턴〉	작: 소냐 켈리(Sonya Kelly) 번역: 신혜빈 연출: 윤혜숙
5.28~6.15	연극	〈인정투쟁; 예술가 편〉	작·연출: 이연주
6.25~7.13	연극	〈크리스천스〉	작: 루카스 네이스(Lukas Hnath) 연출: 민새름

### 전시

5.15~6.22	〈우리는 개처럼 밤의 깊은 어둠을 파헤칠 수 없다〉	작가: 고사리, 권동현x권세정, 박화영, 엘리 허경란
-----------	---------------------------------	----------------------------------

### 강연(다시 보기: 두산아트센터 유튜브 [youtube.com/doosanartcenter](https://www.youtube.com/doosanartcenter))

4.8	19:30	인권의 미래	송지우
4.15		아동학대와 훈육의 경계	정익중
4.22		장애학의 관점에서 본 장애인권	김도현
4.29		노동은 어떻게 권리가 되었는가?	이준희
6.3		인권, 다양성과 배려를 넘어서	정희진
6.10		동물의 권리와 동물법	박주연
6.17		노예, 권리를 빼앗긴 자들의 투쟁	권윤경
6.24		로봇의 권리, 인간의 자리	전치형

## 차례

<b>1강</b> 인권의 미래   송지우	10
<b>2강</b> 아동학대와 훈육의 경계   정익중	16
<b>3강</b> 장애학의 관점에서 본 장애인권   김도현	25
<b>4강</b> 노동은 어떻게 권리가 되었는가?   이준희	37
<b>5강</b> 인권, 다양성과 배려를 넘어서   정희진	52
<b>6강</b> 동물의 권리와 동물법   박주연	58
<b>7강</b> 노예, 권리를 빼앗긴 자들의 투쟁   권윤경	66
<b>8강</b> 로봇의 권리, 인간의 자리   전치형	80

# 1강

# 인권의 미래

송지우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정치철학, 법철학, 인권학의 교집합에 있는 문제를 주로 연구하며 서울대학교에서 '정치철학', '인권', '법과 민주주의' 등의 강의를 담당한다.

우리가 '인권'이라 부르는 권리들은 특정한 정치적, 역사적 배경에서 탄생했다. 이 배경은 국제 인권 규범과 제도를 낳았고, 여타 기본권—가령 헌법상 권리—과 구별되는 인권의 제도적 특성을 규정하고, 인권이 풀어야 할 문제의 성격과 범주를 설정했다. 세계인권선언(1948)과 이후 여러 국제조약을 통해 고도로 발달한 국제 인권 규범은 전 세계적으로 인종차별, 성차별, 권위주의적 폭정에 맞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인권은 우리 시대의 대표적인, 어쩌면 유일한 지구 정치 도덕 규범체계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인권은 동시에 그 자체가 강대국의 위선적 억압 기제라는 비판과 의심에서 자유로웠던 적이 없다. 이러한 비판과 의심은 20세기 후반 이후 경제 불평등과 정치 갈등이 심화하며 더욱 힘을 얻었고, 이제 논객들은 '인권의 위기'와 '탈인권시대'를 흔하게 말한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불거지며 2차 세계대전 이후의 국제질서 전체가 도전받으면서, 현 국제질서의 한 축인 인권 역시 생존을 위협받는 듯하다.

이 강연에서 우리는 인권의 정치적, 역사적 배경, 인권의 이론과 개념, 그리고 인권이 직면한 여러 문제 제기와 도전을 차례로 검토한다. 그럼으로써 인권이 미래에도 국제사회의 도덕적 나침반이 될 수 있을지 탐색한다.

인권은 일종의 정치 현상이다. '인권'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익숙해진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새로이 확립된 국제질서에서

인권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어서이다. 이 새로운 국제질서는 유엔 체제를 중심으로 했고, 평화와 인권을 윤리적 기반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기존 질서와 구별된다. 1948년에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은 신체 온전성과 개인의 기본적 자유, 시민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권리, 정치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권리, 그리고 일련의 사회경제적 권리를 인권으로 선언한다.

이처럼 개인의 이해 관심이 국제사회의 소관이 되었다는 것은 인권의 중요한 특징이다. 요컨대 인권은 여러 가지 중요한 인간 이해 관심 가운데, 그 이해 관심의 충족을 위해 국가, 국제사회와 같은 현대 사회의 주요 행위자들이 제도적으로 조치나 행동을 취하는 게 적절한 경우에 발생한다. 여기서 특히 후자의 요소, 즉 국제적 차원은 인권을 여타 제도적 권리와 구별하는 결정적 특징이다. 이 발상을 요약하는 표현으로 “인권은 국제적 관심사항”(human rights are matters of international concern)이라는 말이 있다. 인권이 우리 시대에 어떤 정치적 역할을 하는지 잘 드러내는 표현이다.

세계인권선언과 이후 여러 국제조약에 명시되는 인권에는 고문금지, 노예제 금지, 신체의 자유, 인간의 존엄성 존중, 거주와 이전의 자유, 재판상의 권리, 소급처벌 금지, 사생활 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가정과 혼인의 보호, 아동 보호, 참정권 등의 “시민정치권”과 근로의 권리, 근로조건, 노조 결성권, 사회보장 권리, 가정의 보호, 의식주에 대한 권리, 건강권, 교육의 권리 등의 “사회경제권”이 공히 포함된다. 길게

보면, 국제기준으로 통용되는 인권 규범은 확장적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새로운 조약이나 여타 규범의 채택으로 새로운 권리가 인 권으로 인정되기도 하고, 기존 조약의 조약 기구를 통해 확장적 해석이 적용되기도 한다. 후자의 예로 성적 지향에 근거한 차별의 금지가 있다. 20세기 중반에 채택된 국제 인권 조약들은 모두 비차별 원칙을 포함하지만, 성적 지향을 별도의 차별 금지 사유로 명시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들 조약의 조약 기구들은 조약 해석에 있어서 성적 지향에 근거한 차별 역시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일관되게 보고 있으며, 지금은 성적 지향에 근거한 차별이 인권 침해라는 인식이 국제적으로 널리 받아들여진 상황이다.

인권 제도가 고도로 발달하고 인권의 언어와 규범이 확산함에 따라 인권에 대한 성찰 그리고 다양한 각도의 비판도 늘어났다. 가령 인권의 보편성에 관한 의구심이 있다. 인권이 보편적 권리라고 흔히 말하지만, 현재 국제기준상 인권으로 인정되는 권리들이 정말 모든 문화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권리들인지, 과도한 문화적 혹은 이데올로기적 편향을 드러내지는 것은 아닌지, 부당하게 서구 중심적이지는 않은지 등의 의문이 제기되고는 한다. 또 인권 규범은 사실 위선적이라는 비판도 있다. 인권 규범은 사실 선택적으로 적용되어서, 자국 인권상황 때문에 국제적으로 지탄받거나 외교적 압박에 처하는 국가들은 대체로 약소국이고, 강대국은 인권 침해를 저질러도 큰 문제 없이 지나간다는 의심이다. 최근에는 급기야 국제 인권 규범이 사실 쓸모없다는 비판도 제기되고는 한다.

인권은 국제법 및 정치 제도 내 중요성에 비해, 정작 급증하는 경제 불평등이나 정치적 불안과 같은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섬세하게 검토할 경우, 세 가지 비판 모두 지나치거나 과장된 면이 있다. 다만 인권의 미래를 전망할 때, 다양한 각도의 비판에서 공히 드러나는 지적 한 가지, 즉 국제 인권 규범이 구조적 위협에 대응할 역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특히 중요해 보인다. 예를 들어 현재 인권에 대한 가장 심각한 위협 가운데에는 기후 위기가 있다. 기후 위기의 인권 위협은 20세기 중반 국제 인권 제도가 출현할 당시 널리 인식된 인권 위협은 아니다. 당시 사람들이 주로 생각한 인권 침해는 (통상 국가인) 특정한 가해자와 특정한 피해자가 지목될 수 있는 것이었던 반면, 기후 위기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 선명한 인과관계를 확립하기는 어려운 유형의 인권 위협이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제 인권 운동은 창의적인 법리 해석, 환경권과 같은 새로운 권리의 광범위한 인정 등을 통해 기후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노력하는 중이다. 이러한 노력이 실제 성과를 내는지는 인권의 미래를 평가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인권의 국제규범화, 즉 모든 인간이 인종, 성별, 출생 신분 등과 상관없이 저마다 동등하게 지니는 기본권이 있으며, 국제사회가 이 권리들의 보호에 역할을 해야 한다는 발상의 확산 및 제도화는 일종의 도덕적 혁신이었다고 할 수 있다. 지금 우리는 인권 존중이 무조건적인 비간섭을 뜻하는 게 아니라, 보편적 인권 존

중, 보호, 및 실현을 전제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으며, 이는 인류의 긴 역사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획기적인 사실이다.

인권이 이처럼 중요한 역할을 한 만큼, 인권에 대한 비판과 회의도 많다. 인권 규범이 국가들에 대한 부당한 간섭으로 이어진 다거나, 인권의 내용이 지나치게 급진적이라는 비판과, 인권 규범은 오히려 보수적이고 충분한 변화를 끌어내지 못했다는 비판이 공존한다. 때로는 인권 비판론의 논거가 빈약하고, 때로는 인권 규범과 제도의 성과가 불완전한 것이 사실이다. 인권이 우리 시대의 지구 정치 도덕으로 계속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이러한 불완전성을 개선하여 새로운 위협과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 2강

# 아동학대와 훈육의 경계

## 정익중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서 학사 및 석사 학위를 받고 미국 워싱턴대학교 아동청소년복지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아동권리보장원 설립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아동과 청소년의 복지와 권리에 관한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현재 아동권리보장원 제2대 원장이다. 저서로 『아동복지론』(공저), 『청소년복지론』(공저), 『사례관리의 이해』(공저) 등이 있다.

아동학대와 빈곤은 아동기에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위기다. 특히, 아동학대는 아이를 독립된 인격체가 아니라 부모의 소유물로 여기는 것에서 기인한다. 실제로 부모가 아동에게 학대를 가할 때, 아동은 신체적 손상뿐 아니라 평생 치유하기 힘든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된다. 그러나 가정의 추악한 비밀은 사생활로 감춰지기 쉽고, 아이들은 부모가 하나뿐인 소중한 존재이기에 학대 사실을 대부분 숨긴다. 이렇듯 가정 내 아동학대는 은폐되기 쉬우므로 주변의 관심과 신고가 절실하다. 이 강연은 아동학대의 현황과 사례를 살펴보고, 학대와 훈육은 어떻게 다른지, 올바른 양육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본다.

## 아동학대 현황과 사례

2013년 발생한 울산 울주군 여아 학대 사망 사건은 아동학대 사망에 대해 최초로 진상조사를 실시한 사례다. 이 진상조사를 통해 ‘이서현 보고서’가 만들어졌고, 후속으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또한, 2016년 대구 입양아동 학대 사망으로 작성된 ‘은비 보고서’를 통해 한국 입양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등이 마련되었다. 하지만, 지속적인 제도 개선 등 노력에도 불구하고 2020년 ‘양친구 입양아 사망 사건’이 발생하여 수많은 국민의 공분을 사게 됐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에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

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와 같은 적극적인 가해 행위뿐 아니라 정서적 학대나 방임 등 소극적 의미의 행위까지 모두 포함된다. 실제로 2022년 아동학대 주요 통계에 따르면 전체 학대 사례 중 신체학대 17.6%, 정서학대 38.0%, 방임 7.3%, 중복학대 34.9%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학대 행위자의 82.7%가 부모로 가장 많았고, 대리 양육자가 10.9%, 친인척 3.1% 순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학대가 가정에서 발생하는 만큼 아동학대는 저항할 수도 없고 도움을 청할 사람도 없이 고립된 상황 속에 아동에게 가해지는 잔혹한 폭력이다. 더 이상 남의 가정사로 치부되거나 남의 가족 내 문제로 인식될 일이 아닌 중대한 범죄다.

아동학대의 80% 이상이 타인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가정 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주변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따라 본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26개 직군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선정하였다.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 발견 시 신속히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고,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특례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군 종사자는 아동복지법 제26조에 따라 '신고 의무 교육'을 받아야 한다.

## 학대와 훈육은 어떻게 다른가?

한국 합계출산율 0.72명. 출산율이 이렇게 낮은 것은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아이를 낳아 키우기 어렵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숫자다. 우리 사회에 양육이 어렵다는 인식이 만연하여 아동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은 편이다. 실제로 부모들은 양육을 위해 본인 생활의 많은 부분을 포기하고 있다고 느낀다. 물론 양육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 인식도 무시할 수 없지만, ‘아이는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라는 말처럼,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자녀의 인격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존재가 부모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즉,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양육자로서 생활의 모범을 보이고 그 역할과 책임을 잘 감당해야 한다.

아동학대와 관련된 여러 사례 중 이목을 끄는 것이 있다. 약을 안 쓰고 아이를 키운다는 부모들이 모인 카페가 있는데 일명 ‘안아키’로 불리고 있으며, 카페 설립자는 실제로 관련 책도 출간하였다. 2023년에도 여전히 5천 명 이상의 회원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의 활동이 논란이 된 것은 자연 치유라는 명목으로 아이들에게 필수 예방접종을 하지 않는 등 아픈 아이를 방치한다는 내용이 인터넷을 통해 퍼지고 일부 극단적 사례가 공론화되면서 아동학대 논란으로 불거졌다. 한 시민단체에서는 카페 운영자 등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하였으며, 보건복지부에서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검토하기도 하였다. 과연 안아키는 아동학대로 볼 수 있을까? 극단적 사례는 언제나 위협하다. 하지만 극단

적 사례가 아니라면 이들의 관점에서 잘 양육하기 위해 진행된 행위를 학대로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

또한 아동의 양육 과정에서 훈육을 위해 아동에게 체벌을 가하는 것도 학대로 볼 수 있을까? 유교 문화인 아시아권 사회에서 '사랑의 매'는 학대의 영역보다는 훈육의 범위로 용인되는 부분이 많았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되었던 민법 제915조 징계권이 2021년 1월 폐지되었다. 징계권 규정이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으로 이어지므로 이 규정을 삭제해 체벌 금지의 취지를 명확히 한 것이다. 이제 더이상 체벌은 훈육이 아니라 아동에 대한 폭력이며 범죄이다. 하지만 징계권 폐지를 아는 부모는 54.8%에 불과하다. 법 개정만으로는 인식이나 행동 변화가 쉽지 않다. 우리의 양육 문화가 함께 바뀌어야 한다.

훈육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훈육을 핑계로 자녀를 학대하지 말라는 것이다. '아이들은 믿는 만큼 자란다'는 말이 있듯이 어려움을 공감하고 격려하며 기다리다 보면 원래 상태로, 혹은 더 성숙한 자녀로 돌아오기 마련이다.

아동 체벌과 훈육의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우리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아동학대 개념의 도입과 재정립이 필요하다. 훈육은 아이에게 허용되는 행동의 범위를 알려주는 것으로 '화내기', '체벌하기'와는 전혀 다르다. 양육자는 아이에게 훈육을 한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감정을 언행으로 표현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이켜보고, 만약 그렇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아동학대의 원인은 크게 아동 자신과 부모, 가족, 사회적 요인에서 찾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학대를 유발하는 하나의 원인이 또 다른 원인에 영향을 주게 되고 또한 원인 간의 상호적 관계를 맺기 때문에 아동학대의 원인을 명확하게 규정짓기는 매우 어렵다. 아동학대의 잠재적 원인 중 하나는 학대의 대물림이며, 부모의 아동 양육에 대한 지식 부족도 아동학대의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친권을 중시하며 훈육하기 위한 체벌에 대한 사회문화적 허용도가 높은 것이 아동학대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한다.

아동학대에서 치료보다 예방이 더 효과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부모 교육과 인식개선을 통한 아동학대의 사전 예방에 힘써야 한다. 자식을 낳으면 바로 부모가 되지만 ‘부모답기’는 어렵다는 말이 있듯이, 아무런 교육 없이 부모가 되는 일이 없도록 부모 교육과 인식개선을 통한 아동학대의 사전 예방에 힘써야 한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주변에 학대 피해를 받는 아동이나 학대로 의심되는 상황을 발견하면 즉시 아동학대 피해 신고번호 ‘112’로 신고해 주시길 당부드린다.

### **어떻게 아이를 키워야 하는가?: 긍정양육**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을 존중하는 긍정양육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2021년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복지 민간 단체들이 함께 긍정양육을 위한 원칙을 마련하였다. 바로 ‘긍정양육

129원칙'이다. 긍정양육 129원칙은 아동 존중 원칙에 기반한 체벌 없는 양육 방법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여 부모와 자녀 간 상호 소통과 이해, 신뢰를 바탕으로 한 양육 방법이다. 긍정양육 129원칙은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는 것을 1가지 기본 전제로 하며, 부모와 자녀가 서로 이해와 믿음을 갖는 2가지 실천 원리를 바탕으로 다음의 9가지 실천 방법을 제시한다.

- ① 자녀 알기: 아이들은 저마다 기질과 성격이 다르고, 발달 특성의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자녀를 잘 살펴보기
- ② 나 돌아보기: 부모로서의 나 자신은 어떤 특성과 개선할 점이 있는지 돌아켜보기
- ③ 관점 바꾸기: 내 자녀의 '문제' 행동이라 생각한 것이 정말 고쳐야 할 행동인지에 대해 관점 바꿔보기
- ④ 같이 성장하기: 부모로서의 내 역할을 자녀의 성장에 맞춰 변화시키기
- ⑤ 온전히 집중하기: 자녀와 보내는 시간에는 온전히 자녀에게만 집중하기

- ⑥ 경청하고 공감하기: 자녀의 의사 표현을 적극적으로 들어 주고 자녀의 감정에 공감해 주기
- ⑦ 일관성 유지하기: 자녀가 동의할 수 있는 약속과 규칙을 정하고, 일관성 있는 태도로 대하기
- ⑧ 실수 인정하기: 부모도 때로는 실수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사과하기
- ⑨ 함께 키우기: 양육은 부모만의 책임이 아니므로 어려움이 있을 때는 주변 사람이나 전문가에게 도움 요청하기

아동권리보장원은 긍정양육 확산을 위해 다양한 교육과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동권리보장원의 홈페이지 ([www.ncrc.or.kr](http://www.ncrc.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아동권리보장원 기관 소개**

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아동을 임신·출산에서부터 자립까지 더욱 촘촘히 보호하고 돌볼 수 있는 공적 체계를 만들고자 중앙입양원,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등 8개 아동 관련 민간의 중앙기관이 통합된 보건복지부 산

하의 공공기관이다. 2019년 7월 설립된 아동권리보장원은 민간의 아동복지 사업들이 공공으로 통합되면서 한국 아동정책의 중심 허브 기능과 핵심 인프라로서의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아동복지법 제10조의 2에 따라 아동권리보장원이 수행하는 주요 사업들로는 아동정책의 수립과 평가를 지원하고 아동의 권리 향상과 인식 향상을 위한 사업, 취약계층 아동의 성장과 발달, 지역 사회 기반의 아동돌봄센터 운영 및 지원이 있다. 아울러 아동학대 대응과 예방, 지역 아동보호체계의 안정화 및 실종아동 발생을 예방하고 장기 실종아동의 가족을 지원하며, 입양과 가정위탁과 같이 아동이 최대한 가정 환경에서 보호될 수 있도록 정책과 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또한 아동양육시설의 퇴소 등 보호 종결을 앞둔 자립 준비 청년들이 사회적,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3강

# 장애학의 관점에서 본 장애인권

김도현

노들장애학궁리소 연구활동가이자 장애인언론  
<비마이너> 발행인으로 일하고 있다. 『당신은 장애를  
아는가』(메이데이, 2007), 『장애학의 도전』(오월의봄,  
2019) 등을 썼고, 『철학, 장애를 논하다』(그린비, 2020),  
『장애의 정치학을 위하여』(후마니타스, 2023) 등을  
우리말로 옮겼다. 2004년에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가  
수여하는 제2회 정태수상을, 2009년에  
김진균기념사업회가 수여하는 제4회 김진균상(사회운동  
부문)을 받았다.

## 장애인, 비장애인 중심 사회가 만들어 낸 범주

페미니스트 정희진이 자신의 책 『페미니즘의 도전』에서 적절하게 비유했듯이, 약속장식의 법칙이 지배하는 동물의 세계에서 먹는 자와 먹히는 자가 존재한다면, 인간의 세계에서는 정의하는 자와 정의 당하는 자가 존재한다. ‘극동아시아’라는 표현은 19세기에 해가 지지 않는 제국으로서 번성했던 영국 런던의 그리니치 천문대를 기준으로 규정된 명칭이다. 아마도 20세기 들어 경도가 그어졌다면 미국의 워싱턴 정도를 기준으로 했을 테니, 한국은 ‘극서아시아’ 지방이 되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신대륙이라는 표현도 유럽을 기준으로 한 말이며, 유색인종이라는 표현 역시 백인종을 기준으로 하여 나머지 인종을 깡그리 하나의 집단으로 묶어 버린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역사에 가정은 없다고 하지만, 만일 흑인종이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유색인종이라는 범주는 결코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오히려 흑인종을 빼고 나머지 인종들을 하나로 묶는 범주, 예를 들자면 ‘희끄무레 죽죽한 인종’이나 ‘허여멀건 인종’이라는 범주가 존재했을지언정 말이다.

사실 우리 사회가 장애인이라고 규정한 범주 내에 존재하는 사람들은 매우 다양한 차이들을 지니고 있다. 또한 많은 경우 장애인 내부의 차이는 비장애인과 장애인 간의 차이보다도 크다.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설명해 보기로 하자. 언젠가 여러 장애인 단체들이 모이는 회의에 실무자로 참석한 적이 있었다. 어쩌다 보니 약속 시간보다 한 30분쯤 일찍 회의 장소에 가게 되었는데, 시각장애인

한 명이 먼저 와 기다리고 있었고, 곧이어 청각장애인 단체에서 일하는 농인 한 명이 도착했다. 심심하기도 하고 멍뚱뚱뚱 앉아 있기도 뭐해서 나는 통성명을 청했고, 두 사람과 각각 먼저 인사를 나누었다. 그리고 나서 나는 별생각 없이 “두 분도 서로 인사도 나누고 이야기도 좀 나누시죠”라고 얘기를 했는데, 순간 매우 싸~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말았다. 비장애인인 나는 시각장애인과는 음성언어로, 농인과는 수어 혹은 필담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었지만, 두 장애인은 직접 소통하는 것이 불가능했던 것이다.

이러한 예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농인, 나, 시각장애인이라는 3명의 집단 내에서 두 명의 장애인 간의 차이는 나와 다른 두 명의 장애인 간의 차이보다 더 크다. 몸 자체의 차이도 그렇고, 구체적인 생활 장면 속에서 겪게 되는 차이도 그렇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제외한 나머지 두 명이 하나의 집단(장애인)으로 분류되는 것은, 바로 나(비장애인)의 몸이 표준이라는 전제 아래, 비장애인의 시각에서 인간을 분류했기 때문이다. 즉 장애인은 비장애인 중심주의에 따른 임의적인 범주인 것이다.

‘성소수자’라는 범주의 경우에는 이러한 권력관계가 그 용어 자체에서 직접적으로 드러난다.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인터섹스, 퀘스처너리, 에이섹슈얼 등과 같은 다양한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을 지닌 사람들(LGBTIQ+)이 하나의 범주로 묶이는 이유는 오로지 그들이 성적으로 소수자[약세자(弱勢者)]이기 때문이다. 즉 우리 사회에서 이성애와 시스젠더를 기준으로 한 성차별이 사라진다면 그들은 더 이상 소수자가 아닐 것이고, 성소

수자라는 범주도 필요하지 않게 될 것이다.

## 무엇이 장애인가?

인류의 역사에서 인간을 구분하는 하나의 범주로서 ‘장애인’이라는 개념이 형성된 것은 불과 200~300년 전의 일이며, 장애가 무엇이고 누가 장애인인지를 우리 사회가 명확히 규정한 것은 그보다도 훨씬 더 늦은 매우 최근의 일이다. 1980년에 세계보건기구(WHO)가 발표한 국제 손상·장애·핸디캡 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Impairments, Disabilities and Handicaps, ICIDH)가 장애에 대한 최초의 국제적 정의이자, 구체적으로 무엇이 장애이며 누가 장애인인지를 명시한 기준이다.

ICIDH에 따르면 장애란 신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어떤 사람의 몸에 손상(impairment)이라고 간주될 수 있을 만한 이상(異常)이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게 어떤 사람의 몸에 손상이 존재하게 되면, 그 사람은 손상으로 인해 무언가를 할 수 없는 상태(disability)에 빠진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결국 그는 사회적으로 불리한 처지(handicap)에 놓이게 된다. 즉 장애란 ‘손상→장애→핸디캡’이라는 3단계 인과 도식을 통해 규정된다. 장애에 대한 이런 정의는 대다수 사람들의 고개를 끄덕이게 할 만한 것이다.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던 장애를 간결하면서도 논리적으로 깔끔하게 정리해 준다는

느낌이 든다. 실제로 ICIDH가 발표된 이후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의 장애 관련 법률들은 거의 대부분 이를 준거 삼아 장애를 정의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한국의 장애인단체들이 오랫동안의 토론과 논의를 거쳐 지난 2005년 9월 20일 입법 발의했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장애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었다. 2007년 3월에 법안이 실제로 국회를 통과할 때는, 정부의 처지에 의해 기존의 <장애인복지법>과 유사한 내용으로 수정되었지만 말이다.

#### 제2조(장애)

① “장애”라 함은 장·단기간 혹은 일시적으로 발생한 신체적·정신적 손상, 기능상실, 질병 등이 사회적 태도나 문화적, 물리적 장벽으로 인하여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가져오는 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정의에서 사용되고 있는 단어들 자체는 앞서 제시된 주류적 정의와 엇비슷한 것 같지만, 결정적인 차이는 ‘~인하여’ 앞에 무엇이 위치해 있는가, 즉 장애의 원인을 어디에서 찾고 있는가이다.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정의가 도출되는 관점과 그 의미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 손상 때문에 버스를 탈 수 없고 책을 읽을 수 없는 사람들?

우선 눈에 잘 띄는 신체적 손상에 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자. 어떤 사람이 다리에, 척추장애인이거나 척수에, 뇌병변장애인이거나 어떤 운동을 관장하는 뇌의 특정 부위에 손상을 지니고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휠체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이 휠체어를 탄 채 일반 시내버스에 승차하기란 불가능하다. 즉 이들은 ‘버스를 탈 수 없음’이라는 장애를 경험하게 된다. ICIDH의 도식에 따르면, 이런 경우 버스를 탈 수 없는 이유는 그 사람의 몸에 존재하는 손상 때문이다.

장애인들의 이동권 투쟁으로 2005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제정된 덕분에, 요즘은 (여전히 드물긴 하지만) 일반 시내버스와는 조금 다르게 생긴 버스들이 돌아다닌다. 바닥이 낮고 계단이 없으며 뒤쪽 문에서 경사로가 나오는 버스, 다름아닌 저상 버스다. 그렇다면 앞서 언급한 것과 똑같은 손상을 지닌 사람이 저상버스는 탈 수 있을까? 그렇다, 당연히 탈 수 있다. 이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동일한 손상을 지닌 동일한 사람이, 버스 타기라는 동일한 행위를, 어떤 경우에는 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할 수 없다. 그렇다면 ‘버스를 탈 수 없음’의 원인이 과연 그 사람의 몸에 존재하는 손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 원인이란 일정한 결과를 만들어 내는 요인이다. 손상이라는 요인은 그대로인데 버스를 탈 수 있기도 하고 탈 수 없기도 하다면, 문제의 원인은 그 사람의 몸이 아니라 바로 버스에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감각적인 영역의 손상, 이를테면 시각에 손상을 지닌 맹인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사람들은 흔히 맹인이 책을 읽을 수 없다고 여기고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말한다. ICIDH에 따르면 그들이 ‘책을 읽을 수 없음’이라는 장애를 경험하는 건 시각에 존재하는 손상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그건 정확히 비장애인(비맹인) 중심적인 사고일 뿐이다. 그들이 읽지 못하는 책은 묵자(墨字)로 된 책일 뿐, 점자(點字)로 된 책은 얼마든지 읽을 수 있다. 즉 맹인의 눈에 손상이 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지만, 제공되는 책의 형식에 따라 읽을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읽을 수 없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면 책을 읽을 수 없는 것이 그들의 시각에 존재하는 손상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 **무엇이 발달장애인들의 자립을 가로막는가**

2006년 하반기에 보건복지부가 활동보조서비스 제공 계획안을 발표했을 때, 그 최초 계획안에는 일부 유형의 장애인들이 서비스 제공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바로 발달장애인이 말이다. 그리고 그 이유는 발달장애인은 인지적 손상으로 인해 자립할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자립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서비스의 취지나 목적과 맞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당시 보건복지부가 폄하했던 이러한 논리에는 그 나름의 ‘현상적인’ 근거가 있었다. 우리나라의 장애 인구 중 발달장애인의 비율은 그리 높지 않다. 전체

등록 장애인 중 약 8% 정도가 발달장애인이다. 그런데 장애인이 수용된 거주시설에 가보면 생활인의 80% 이상이 발달장애인이다. 장애 인구의 8%에 불과한 발달장애인이 시설 거주인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그들 대다수가 자립하지 못하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그러나 해외의 복지국가들로 연수를 다녀온 동료 활동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곳의 발달장애인들은 우리나라 처럼 시설에 수용된 게 아니라 대부분 자립해 지역사회에 통합된 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

특히 문헌을 통해 확인해 본 노르웨이의 사례는 무척이나 놀라웠다. 서구의 다른 국가들과 비슷하게 노르웨이에서도 1970년대부터 탈시설(deinstitutionalization) 운동이 시작되었다. 이 운동의 영향을 받아 1985년 발간된 노르웨이 정부 공식 위원회 보고서 《발달장애인의 생활 여건(Levekår for psykisk utviklingshemmede)》은 “시설에서 발달장애인이 처해 있는 생활 여건은 인간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것이며, “그러한 상황은 활동의 재조직화나 자원 공급의 증가에 의해 실질적으로 변화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그리고 이 보고서의 내용과 입장을 따라 노르웨이에서는 1988년 6월 시설 체제의 전면적인 개혁을 위한 입법 조치, 즉 일명 ‘시설해체법(avviklingsloven)’이 시행된다. 노르웨이의 이웃 국가인 스웨덴에서도 1990년부터 본격적인 탈시설 작업이 시작되었고, 1997년 10월 제정된 <특수병원 및 거주시설 폐쇄법(Lag om avveckling av specialsjukhus och vårdhem)>에 따라 1999년 12월 31일자

지 모든 장애인 시설이 폐쇄되었다. 이후 이루어진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시설에서 나온 발달장애인의 80%가 탈시설 이후의 생활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자. 우리나라에도 발달장애인이 있고, 위의 나라들에도 발달장애인이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발달장애인은 자립할 수 없고, 그 나라들의 발달장애인은 자립한다. 우리나라의 발달장애인과 그 나라들의 발달장애인이 특별히 다른 '인지적 영역에서의 손상'을 지니기라도 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인지적인 영역에서의 손상이라는 것만 놓고 보면 양쪽 나라의 발달장애인들은 대동소이할 것이다. 그런데 비슷한 손상을 지닌 발달장애인들이 어떤 나라에서는 자립할 수 있고 어떤 나라에서는 자립할 수 없다면, 발달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없음'이라는 장애를 경험하는 원인이 그들의 인지적 '손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ICIDH에 따르면다면 그렇게 정당화할 수 있겠지만 사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인지적 손상이 원인이라면 발달장애인은 어떤 나라에서든 자립할 수 없어야 하니 말이다.

### **특정한 관계 속에서만 손상은 장애가 된다**

이제 정리해 보자. 일정한 손상을 지닌 사람들은 '버스를 탈 수 없음', '책을 읽을 수 없음', '자립할 수 없음'이라는 장애를 경험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설명한 것처럼, '무언가 할 수 없음'의 원인이 그

들의 몸에 있는 손상이라고는 결코 말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기만이다. 그렇다면 그들이 무언가를 할 수 없게 되는 진짜 원인은 무엇일까? 그렇다, 검은 피부를 지닌 사람들이 노예가 되는 원인이 검은 피부가 아니라 차별과 억압인 것처럼, 일정한 손상을 지닌 사람들이 무언가를 할 수 없게 되는 원인 역시 손상이 아니라 바로 차별과 억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손상—[차별과 억압]→장애’인 것이다. 카를 마르크스는 “흑인은 흑인일 뿐이다. 특정한 관계 속에서만 흑인은 노예가 된다”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손상은 손상일 뿐이다. 특정한 관계 속에서만 손상은 장애가 된다.’ 이때 특정한 관계란 다름 아닌 ‘차별적’이고 ‘억압적’인 관계이며,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장애인은 ‘장애인이기 때문에 차별받는 것이 아니라, 차별받기 때문에 장애인이 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손상을 지닌 무능력한 사람이어서 차별받는 것이 아니라, 차별받기 때문에 무언가를 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 **장애 문제는 장애인의 문제가 아니다**

질문을 하나 던져 보도록 하자. 장애 문제가 장애인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동안 많이 이야기했던 근거는 크게 보자면 다음의 2가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첫째, 이동권의 문제, 혹은 보편적 디자인(universal design)

을 얘기하며,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하는 것이 단지 장애인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노약자·임산부·어린이 등 사회 전체 구성원을 위한 일이라는 것. 둘째, 장애인의 열 명 중 아홉 명은 후천적 장애인이라는 사실 속에서, 비장애인도 언제든지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것, 즉 우리 모두가 예비 장애인(the potentially disable-bodied) 내지는 일시적 비장애인(the temporarily able-bodied, TAB)이라는 근거 말이다.

나는 이것이 틀렸다고 얘기할 생각은 없지만, 근본적인 지점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러한 근거가 ‘보협’의 논리와 크게 다를 바가 없으며, 자본주의 사회가 부추기고 강화하는 이기심에 부박하게 편승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이러한 논리로 우리 모두가 장애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면, 여성이 될 가능성이 없는 남성은 여성문제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고, 동성애자가 될 가능성이 없는 이성애자는 동성애자의 문제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으며, 흑인이 될 가능성이 없는 백인 역시 인종 문제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 장애 문제에 관심을 두고 함께 해야 하는 이유, 혹은 장애 문제가 우리의 문제인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기본적으로 장애 문제가, 즉 장애인을 둘러싼 다양한 차별과 억압이, ‘장애인’의 문제가 아니라 경쟁과 효율성의 논리에 병들어 있는 우리 ‘사회’의 문제이기 때문이다(그러한 의미에서 장애인 문제라는 표현보다는 장애 문제라는 표현이 적절하다). 그리고 여성 문제가 여성 일방의 문제가 아니라, 가부장제를 매개로 한 여성-남성

간의 관계의 문제이며, 노동문제가 노동자 일방의 문제가 아닌 노동력의 상품화를 매개로 한 노동자-자본가 간의 관계의 문제인 것처럼, 장애 문제는 장애인을 억압하는 사회 구조를 매개로 한 장애인-비장애인 간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즉, 남성이 여성문제의 한 일방이며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이 바뀌어야 여성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비장애인 역시 장애 문제의 한 일방이며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과 비장애인 중심 사회가 바뀌어야 장애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하기에 장애 문제는 언제나 우리 모두의 문제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 4강

# 노동은 어떻게 권리가 되었는가?

이준희

“인간이 쥐는 아픔 중 법률이 보호해야 하는 것은 어디까지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노동법을 공부하고 있다.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및 대학원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법제팀장과 노동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을 역임했고,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에서 강의했다. 지금은 광운대학교 법학부 교수로서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을 강의하고 있다. 『단체교섭법론』, 『직장에서의 괴롭힘』 등의 책을 썼다.

## 1. 노동이 권리인가?

우리 사회에서 노동은 과연 권리인가?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은 국가에 대하여 근로할 수 있도록 원하는 일자리를 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추상적인 권리로서 국가가 모든 국민이 적절한 임금을 받으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라고 보는 것이 헌법학자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근로’라는 표현은 ‘노동’과 같은 것일까요? 많은 논란이 있지만, 저는 이 두 용어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근로’는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고 계약의 내용대로 일을 해주는 때의 그 일을 지칭합니다. 그렇다면 노동은? ‘노동’은 꼭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몸과 정신을 이용해서 소위 육체노동이나 정신노동을 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활동을 뜻합니다. 조선시대에도 그리 다르지 않았죠. 그렇다면 헌법 제32조가 말하는 근로의 권리는, 이 주제가 의도했던 그 노동은 아니었나 봅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합니다. 이것이 노동과 관련이 있을까요? 잘 모르겠죠? 저는 이것이 소위 “권리가 된 노동”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헌법 제33조는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뭉쳐서 사용자와 대등한 힘을 만들고 그래서 사용자와 대등하게 교섭하고 자신

들의 요구사항을 합의서로 만들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된다는, 그 유명한 노동3권을 규정한 조항이기 때문입니다. 노동조합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단결권, 단체의 힘을 이용해서 사용자와 대등하게 교섭할 수 있는 단체교섭권, 그 합의를 서면으로 작성해서 지키라고 요구할 수 있고 말을 듣지 않을 때 물리력을 쓸 수 있는 단체행동권. 이 노동3권은 어떻게 권리로써 보장될 수 있게 되었을까? 저는 일단 이것이 오늘 강의 주제의 질문이라고 정리하겠습니다. 헌법 제33조 제1항의 명령에 따라 제정된 우리나라의 법률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라는 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을 토대로 노동조합을 만들고 파업을 합니다.

노동이 권리가 되어온 길은, 첫 번째 노동과 관련된 권리가 ‘법’에 받아들여졌고, 두 번째 그 규정된 권리가 적용되도록 만들어 온 두 가지의 큰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2. 노동이 권리가 되어온 과정

(1) 이 노동3권은 처음부터 권리로 보장되지는 않았습니다.

1764년 이후 증기기관이 공업용 기계로서 실용화되면서, 영국을 필두로 직조기·동력 기계가 빠르게 발달하고, 증기기관을 활용한 공장제 대량생산 체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것을 ‘산업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초기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인클로저운동 등으로 장

원경제가 무너지면서 전통적인 농민 계급이 몰락하여 대규모 부랑자, 무산자 계급이 역사에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공장의 생산 인력으로 유입되었습니다. 전형적인 소위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등장입니다. 이때 유동 빈민의 도시 유입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공장제 노동에 있어서 노동력의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수요 초과의 노동 시장이 형성되었습니다. 당시의 열악한 인권 개념에 더하여, 임금·근로조건을 심각한 하락, 질병과 사고 증가, 불공정한 처우 등의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공장 근로자는 일자리를 그만둘 자유마저 빼앗긴 채 매우 처절한 환경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증기관 옆에서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는 당시의 상황을 일본 학자들은 고한노동(苦汗勞動)이라고 번역했고, 그것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1800년대 전후의 일입니다.

이와 같은 심각한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과 수명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자, 영국은 순회재판관들을 각지에 파견하여 전국적인 노동자의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1802년에 아동보호법(Factory Acts, 공장법)을 제정하여 최저 근로조건을 처음으로 법제화합니다. 주요 내용은 하루 12시간 이상 근로 및 야간근로 금지, 월 1회 휴일 의무화(교회 출석) 등입니다. 이는 근로 기준에 관한 법률의 효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영국의 공장법은 프랑스와 독일 등 인근 유럽 국가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근로자들이 이처럼 억압된 상태에서 노동하면서도 제대로 저항하거나 탈출할 수 없었던 것은 근로자의 과도한 사용자에 대한 종속 심화 때문입니다. 이를 방지하거나 개선하기 위한 초기 노

동법의 목표는, 사용자에게 대한 근로자의 과도한 ‘종속성’을 완화시켜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경제적, 인격적, 조직적으로 근로자가 사용자와 기업에 과도하게 종속되는 현상이 근로자의 강제노동, 빈곤 고착화, 불균형 심화의 원인이라고 인식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과거 자유로운 경제주체 사이의 노동력 거래는 민법(일반 계약법)을 통해 규율되면 충분하므로, ‘자유의 원칙’에 따라 해결하면 된다는 생각을 무너뜨리고, 다른 법률적 수단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계약 관계에 대한 국가의 자유방임이 경제적 종속성과 인(격)적 종속성을 오히려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었으므로, 강행법률을 통한 국가 입법권의 간섭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형성되기에 이른 것입니다. 여기서 경제적 종속성이란, 근로자의 생계가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의존되는 경향을 말합니다. 인(격)적 종속성은, 노동력 제공 여부, 시점, 장소, 종류가 사용자의 결정에 예측되는 경향(타인결정성)을 말합니다. 근로자의 종속성 완화를 위한 특별한 법의 보호 방향은 첫 번째, 근로계약과 근로조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규제와 조정을 시도하는 개별 근로관계에서의 근로기준법과 같은 규제법의 제정 및 적용을 통한 종속성 완화, 두 번째, 근로자들이 집단적 의사 형성과 집단적 행동을 통한 교섭 허용을 허용하는 방법을 통해 노동조합 활동을 강화하여 대등성을 강화하는 방향 등으로 이어졌습니다.

## (2) 노동조합의 조직적 저항과 합법화 진행

먼저 영국 등 유럽 대륙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1800년대 초반 영국과 유럽 일부 지역의 산업계를 뒤흔든 두드러지는 사건은 1811년 러다이트(Luddites) 기계파괴운동, 식량폭동 등입니다. 그중 러다이트 기계파괴운동은 세간에는 노동자의 자본가에 대한 폭력적 저항운동이라고 알려졌지만, 실상은 중소 전통 자본가와 대규모 신규 자본가 사이의 물리적 충돌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도제 제도를 중심으로 숙련도를 쌓은 장인이 수작업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 길드 구성원들은 대규모 공장제 산업의 등장을 불안하고 치명적인 도전으로 여겼습니다. 숙련도가 필요 없고, 부랑자를 투입해도 숙련공이 만든 것과 다름없는 균일하고 고품질의 생산품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생계를 위해 공장을 파괴하고 재기가 불가능하도록 불태워야 한다고 생각했고, 주로 밤을 이용해 공장을 습격했습니다.

러다이트 운동은 ㉠ 특정 공장에 대한 타깃 공격, ㉡ 대체노동력 고용 위기 회피, ㉢ 일회적 행동이므로 단결체를 유지하는 부담이 없다는 것 등의 특징이 있습니다. 공장 사용자들은 근로자들에게 러다이트에 대항하여 공장을 지켜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근로자들은 그 대가로 근로조건 개선해줄 것을 합의하고 그 내용을 문서화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이 유럽에서 초기에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이 등장하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사용자들은 위기가 지나가고 나자 이렇게 만들어진 단체협약을 이행하기를 거부했습니다. 단체협약을 사용자가 조합원에게 이행해야 하는 법률적 근거나 의무가 없다는 것이 주된 논리였습니다. 초기 유럽 각국, 스위스,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의 대법원은 사용자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을 그대로 둘 수 없었던 노동자들의 조직적 저항이 지속되자 결국 각국은 법률을 통해 사용자가 단체협약을 근로자들에게 이행해서 근로조건을 개선해 주어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기에 이릅니다. 현장과 사법부의 후진성을 입법을 통해 해결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에도 규정되어 있는 단체협약 기준의 효력, 즉 규범적 효력입니다.

이제는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기업이나 산업이라는 부분사회에 적용되는 '규범', 즉 '법'이라는 인식이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있습니다. 유럽에서 노동조합의 투쟁은 간단히 보면, 주로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의 승인을 둘러싸고 진행됐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각국은 노동조합을 두려워하고 불법단체로 규정했지만 점차 그러한 시각도 변했습니다. 영국은 1825년에 단결금지법을 폐지하여 노동조합을 합법화했고, 프랑스도 1864년 단결공모죄를 폐지하여 노동조합의 집단행동을 합법화했습니다. 점차 노동조합의 집단행동에 대한 형사 면책이 확산되면서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의 관념이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영국에서는 1875년에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한 형사 면책이 입법되었고, 프랑

스는 1946년 헌법 전문에서 파업권을 헌법상 권리로 인정했습니다. 독일은 1891년 영업조례를 개정한 이후 노동조합을 넘어 종업원평의회체제가 확립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미국에서의 노동이 권리가 된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은 유럽에 비해서 산업혁명이 상대적으로 늦은 가운데, 독립전쟁, 대프랑스 전쟁, 멕시코 전쟁, 남북전쟁 등을 겪으면서 발전이 지체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워낙 천연자원이 풍부하고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는 것은 강점이었죠. 링컨 정부는 남북전쟁에서 승리하면서 공업력과 철도의 이점을 잘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륙횡단철도를 부설하는 것으로 철강산업 부흥과 산업화의 동력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대륙횡단철도의 동서간 연결은 1863년부터 1869년까지 추진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부에서의 공사에는 주로 중국계 노동자가, 동부에서의 공사에는 주로 아일랜드계 노동자가 동원되었고, 그에 섞여 있던 남미계, 원주민계 노동자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링컨 정부는 대륙횡단철도 공사를 맡은 기업들에게 선로 주변의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다액의 보조금을 지급해서 철도 부설공사를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철도 노동자들의 삶은 비참했습니다. 공사 진척도에 따라 주거지를 옮겨야 했는데, 그 열악한 임시 주거지에는 가족들도 모두 함께 이동하며 거주했습니다. 자연히 더위와 추위에 그대로 노출되어야 했고 자녀들의 양육과 교육을 위한 인프라는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

다. 임금도 매우 저액이었습니다. 노동자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사에 교섭을 요구했지만 사용자는 그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대로 해주는데 뭘 더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노동자들은 점점 더 강하게 교섭을 요구했고 그에 맞춰 사용자의 대응도 강해졌습니다. 끝내는 양측간 무력 충돌이 발생하고 연방군이 출동해서 서로 대치하며 전투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노동자들은 군대의 힘 앞에 진압되었죠. 미국에서 노동자들의 단체인 노동조합에는 어떻게 하면 사용자를 교섭 석상에 불러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 중 하나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연장선에 있는 것이 1877년의 대철도파업(Great Railroad Strike)입니다. 이 사태는 웨스트 버지니아의 철도 직원들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임금 10% 삭감에 항의하여 시작한 파업으로 비롯되었습니다. 노동조합의 파업이 여러 주로 확대되었고, 미국 연방 육군이 시위대에 발포하고 강경 진압하면서 큰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노동조합의 힘은 사용자와 국가를 동시에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1차 세계대전(1914~1918)이 발생하고, 미국이 그 전쟁에 참전하면서 많은 백인 남성 노동자들이 군인으로 유럽 전선에 투입되었습니다. 그 결과 미국 본토에는 노동력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여성, 유색인종 노동력에 대한 대우도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미국 대통령 콜리지는 전후 호황기인 1926년에 연방법으로서 철도노동법(Railway Labor Act)을 제정하여서 노사관계의 조정을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전국조정위원회(National Mediation

Board)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이 조치는 그간 철저히 무시되던 노동자들의 파업을 인정하면서 합법적인 절차를 제시하고, 노사 간의 대화가 불가능할 때 조정을 시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비로소 사용자가 단체교섭 자리에 나오도록 하는 제도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후 1929년 경제 대공황을 극복해 내는 과정인 1933년, 프랭클린 D. 루스벨트 정부하에서 와그너법이 제정되면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거부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금지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연방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전속적인 관할권을 가지고 국제 절차를 담당하는 전국노동관계위원회가 1934년에 설립되었습니다. 부당노동행위 금지제도의 핵심은 사용자의 단체교섭거부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오랜 노동자들의 투쟁이 드디어 정부의 협조로 결실을 맺어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할 수 없는 법질서가 확립된 것입니다. 노동자가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것을 '권리'로 인정하는 시대가 마침내 도래했습니다. 이러한 부당노동행위 금지법 질서는 제2차 세계대전(1939~1945) 이후 매카시즘 광풍이 불면서 1947년에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까지 규율하는 등 부침을 겪었으나 그 기본적인 틀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유럽에서 노동의 권리화는 사용자가 단체협약을 조합원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것을 법률로 의무화시키는 흐름 가운데

데 이루어졌습니다. 미국에서의 노동의 권리화는 노동조합의 단체 교섭 요구에 사용자가 응하도록 법률로 의무화 시키는 흐름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유럽과 미국의 이러한 흐름은 우리나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됐을까요?

### (3) 일본을 통한 서구 법질서 수입

일본은 명치유신을 포함한 개화기 이후에 주로 프로이센, 프랑스 등 유럽의 법 제도와 법학을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식민지인 한반도에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일본을 통해 수입된 서구법학과 법이론이 보성전문과 경성제국대학 등을 통해 한반도에 전해졌습니다. 물론 전쟁 중이라는 이유로, 일본에서 개정 논의가 있었던 1926년 노동쟁의조정법은 일본은 물론 식민지에도 전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서는 치안유지법을 적용해서 규제했습니다.

따라서 노동의 권리화는 일제 강점기에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대륙법계에 가까운 법학적 전통은 우리나라에도 확고히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 한반도에서는 일제 자본이 본격적으로 진출하여 자원을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조선인 빈민 근로자가 급증하게 되고 이들은 일제가 운영하는 각종 군수제조업체에 강제 동원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동조합은 일제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저항 수단으로 인식되었으며, 1923년 조선노동동맹, 1926년의 조선노동총동맹활

동 등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하고, 연합군 사령부가 일본 본토에 진주하였습니다. 이때 연합군 사령부는 미국인인 맥아더 장군에 의해 주도되었습니다. 미국은 자신이 설계한 법질서를 일본에 이식하길 원했습니다. 일본은 패전 직후부터 입법을 추진해서 1945년 12월 점령군 사령부가 요구하는 미국식 제도를 반영하여 노동조합법을 제정하고, 1947년에는 노동기준법을 입법했습니다. 노동기준법에는 유럽 대륙의 색채가 강하게 남아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노동법을 제정하지 않은 채 6.25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게 되었는데, 이승만 정부는 이때에도 부정선거를 멈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1952년 7월 2일 발췌개헌(拔萃改憲) 이후 치러진 8월 5일 대통령 선거가 부정선거 논란에 빠지게 되어 책임론이 대두되고 극심한 정국 혼란이 이어져 정치적 위기가 초래됐습니다. 이승만 정부는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1954년 3대 민의원 선거에서 여당이 패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승만 정부는 그 특단의 조치 중 하나로 노동법을 제정하려고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대한노총의 지지를 이끌어내려 한 것입니다. 1953년도에 일본법을 베껴서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등을 순식간에 만들어 냈습니다. 이승만 정부의 정략적 판단이 노동법 제정의 동기가 된 것입니다. 정부는 일본 노동법을 거의 그대로 베끼는 수준으로 노동3법을 급히 제정했습니다. 물론

진진한 의원 등 국회의원들의 노력으로 국회 통과 당시에는 내용이 많이 나아졌지만, 일본 노동법의 번역 수준이라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일본의 노동법 조문을 그대로 수입한 결과, 우리나라의 노동 관련 법률에는 유럽에서 형성된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을 인정하는 제도가 포함되어 있고, 동시에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사용자가 거부할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규제하는 미국식 흐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노동법 분야에 한해서는, 유럽법적 전통과 미국법적 전통을 혼합계수했다고 평가합니다. 물론 그 뒤로 우리 노동법은 독자적인 발전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일본과는 전혀 다르다고 할 만큼 독자적인 색깔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지난 200여 년의 세월 동안 단순한 거래의 대상이고, 천한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던 '노동'은 엄청나게 중요한 권리로 승격되어왔습니다. 이것은 노동자 본인들의 아프지만 용기 있는 저항과 투쟁, 기존의 법질서에 대한 고정관념을 과감히 버린 노동법 학자들과 입법자들의 결단, 비록 이윤 극대화를 지속 가능해지게 하려는 욕망에 터 잡고 있지만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들의 요구를 수용했던 기업가들의 공적이 고루 반영되고 상승작용을 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용자와 노동조합 합의의 결과인 단체협약을 계약이 아니라 법이라고 선언한 것은 노동법 발전의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할 만합니다.

### 3. 법률이 규정한 권리가 실제로 적용된 과정

하지만, 법률이 권리라고 선언해 준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가 실현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법률이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권리를 실현하려는 의지가 발현돼야 합니다. 우리 근로기준법은 1953년도부터 퇴직금을 규정하고 있었지만 1960년대 이후까지 거의 시행되지 않았고, 노동조합법은 누구든지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지만, 오랫동안 노동조합은 아무나 만들 수 있는 조직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있는 세력이나 사용자가 용납하지 않았죠. 1970년대까지도 노동법은 지키지 않는 법이었고,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 전형적인 사례가 노동법이었습니다.

지금은 아주 당연하게 느껴지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던 당시 상황에서, 모두가 당연하다고 고집부리는 것을 단호히 거부하고 당연하지 않다고 외친 용기가 노동법이 법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대표적인 분이 전태일 선생님입니다. 1970년 11월 13일, 노동법을 지키라고 절규하면서 분신하셨죠. 군사정부의 서슬이 퍼런 기세 아래에서 노동법이 정당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목숨 걸고 버텨내신 많은 노동자들, 노동조합들, 많은 변호사님과 판사님들, 노동법 학자들, 이들을 지지한 일반 시민들의 열망과 희생과 노력이 오늘날 어느 법률보다 살아있고 날이 서 있는 노동법을 만들어 냈습니다. 이렇게, 노동과 관련된 권리가 ‘법’에 받아들여지고, 그 규정된 권리가 적용되도록 만들어 온 많은 사람들의 노력을 거쳐 오

늘날 노동은 권리가 되었습니다.

#### **4. 다시 처음으로: 21세기의 리자와 로지와 전태일, 순희재판 관과 루스벨트**

여기서 끝인가요? 우리가 아는 노동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노동자인가요? 한 공간에 같은 시간에 모두 모여서 비슷한 일을 일제히 하다가 정해진 시간에 밥 먹고, 정해진 시간에 일제히 퇴근하는 곳에서 일을 해야 노동자인가요? 산업과 기술이 발전하면서 더 이상 노동은 그렇게 단순하게 정의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는 많은 프리랜서들과 플랫폼노동자들이 자신들이 하는 일도 정당한 노동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노동을 하고 있고 그 노동으로 생계를 이어가면서 자아실현을 하지만, 친척들과 부모님, 주변인들로부터 여전히 “취직해라”라는 요구를 받는 분들입니다. 배달 라이더들, 아르바이트하는 분들, 프리랜서 웹툰 작가들, 보조 스토리작가들, 프리랜서 웹디자이너들, 지입 화물차 기사들, 프로그래머들 등입니다. 이들의 노동은 권리는커녕 노동이라고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18세기에 리자와 로지처럼, 1970년의 전태일이 했던 것처럼 그들은 노동임을, 권리임을 인정해달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제 21세기의 순희재판관과 루스벨트가 등장할 때입니다.

## 5강

# 인권, 다양성과 배려를 넘어서

## 정희진

월간 오디오 매거진 <정희진의 공부> 편집장. 전 이화여대 초빙교수. 다학제적 관점에서 공부와 글쓰기에 관심이 있다. 서강대학교에서 종교학과 사회학을 공부했고,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여성학으로 석사·박사학위를 받았다. '정희진의 글쓰기' 시리즈(전 5권), 『다시 페미니즘의 도전』, 『페미니즘의 도전』, 『아주 친밀한 폭력-가정폭력과 여성인권』, 『혼자서 본 영화』, 『정희진처럼 읽기』, 『낮선 시선』 등을 썼으며, 『한국여성인권운동사』, 『성폭력을 다시 쓴다 - 객관성, 여성운동, 인권』, 『양성평등에 반대한다』, 『미투의 정치학』 등의 편저자다.

A	allosexual(유성애자)	A	asexual(무성애자)
H	heterosexual(이성애자)	L	lesbian(레즈비언)
G	gay(게이)	B	bisexual(양성애자)
Z	zoophilia(동물성애자)	O	objectophilia(사물성애자)
P	pansexual(범성애자)	P	pedophilia(소아성애자)
P	polyamory(폴리아모리)	T	transgender(트랜스젠더)
I	intersex(인터섹스)	Q	questioning(모색 중인 사람)
G	gray sexuality(흔들리는 이들, 중간 지대라는 의미는 아님)		

사람들은, 인간은 남녀 중 하나로만 태어나고 (남성 중심의) 이성애가 “자연의 순리”라고 주장한다. 물론 그것은 주장일 뿐이고 실제 인간의 몸과 성 정체성, 성적 실천(practice)은 매우 다양하다. 위에 적은 항목 외에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성애 외 다른 섹슈얼리티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젠더 이분법을 교란, 해체하며 기존의 젠더와 섹슈얼리티의 관계(예를 들면, 젠더에 의한 섹슈얼리티 억압)를 재정의한다.

유/무성애를 기준으로 하면, 무성애자와 유성애자가 있을 ‘뿐이다’. 유성애자는 다시 대상이 누구인지, 이성, 동성, 사물인지 동물인지에 따라 나뉜다. 오해를 피하기 위해 몇 가지 용어를 설명하면, 사물성애(object sexuality)는 움직이지 않는 특정한 대상에 초점을 둔 성애이다. 범성애자는 말 그대로 우주의 모든 만물이 성애의 대상이다. 물체에 한정하지 않는다. 소아성애자(pedophilia) 정체성

을 ‘타고난’ 이들도 있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의 정체성이 법적, 도덕적 ‘문제’가 있음을 알고 커뮤니티 등의 활동은 하되, 실제 실천은 하지 않거나 하지 않으려고 (극도로) 노력하고 어린이 대상 성범죄자를 검거하는 데 협조한다.

정체성과 일상의 실천은 일치하지 않는다. 오히려 동물이나 아동과의 관계는 합의가 어려우므로 이성애자에 가까운 생활을 하는 이들이 많다. 한편 트랜스젠더나 인터섹스는 인간의 몸의 성별, 즉 생물학적 의미의 섹스인 ‘male’, ‘female’로 구분된다는 지식이 잘못되었음을 보여주는 살아 있는 증거다.

다양하고 유동적인 성 정체성을 드러내는 작업은 이들의 인권을 위해서, 그리고 남성 중심의 이성애를 상대화하고 이성애의 문제들(성폭력, 성 상품화, 가부장적 성적 규범)을 문제화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섹슈얼리티 개념의 가장 문제적이고 좁은 개념은 남녀 간 성교(intercourse)이다. 이 행위가 전부가 아니라고 인식할 때 변화도 가능하다.

몸은 몸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객관적, 중립적인 몸은 없다. 모든 몸은 사회와 문화가 체현된(embodied) 몸(social body/mindful body)이다. 모든 사회에 남녀 구분 질서가 있는 것은 아니며, 남성성과 여성성의 사회적 가치는 각각 다르고, 남녀 구분의 기준도 다르다.

한국 사회는 모든 면에서 분단화, 양단화, 양극화된 ‘드라마틱한’ 사회다. 남녀 이분법에다 획일적인 문화까지 겹쳐 조금이라도

다르면 곧바로 문화적 차별이 따른다. 구성원 스스로가 감시자가 되어 적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성별 구분 외에도 휴대전화나 인터넷 사용, 소비문화, 의류 유행 등 모든 면에서 ‘대세’라는 이름의 일방 문화는 의외의 소수자를 낳는다.

누가 여성인가. 그리고 그 기준은 누가 정한 것인가. 해부학? “여성 과 남성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는 일시적 구호이다. 생물학‘적’ 이유로 차별당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생물학조차 과학적이지 않다. 양성이 있다고 믿는 사회에서는 생물학적 본질주의와 생물학을 혼동한다. 실제로 이 둘은 정반대이다. 생물학은 환경과 문화와 생명체의 상호 작용 과정을 연구하는 학문이지, 본질을 캐는 학문이 아니다. 아니, 생물학뿐이 아니다. 본질을 추구한다면 이미 그것은 학문이 아니라 ‘신앙’이다.

모든 이들은 ‘사람’으로 태어날 뿐인데, 가부장제 사회에서만 인간을 ‘남녀’로 구별한다. 이는 차이가 차별을 낳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 차이를 규정하기 때문이다. 차이가 있어야 차별의 근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흔히 말하는 “차이는 인정하되,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표현은 차이를 원래 있는 것처럼 본질화, 고정화하는 사고방식이다.

무엇이 의미 있는 차이인지, 아닌지를 정하는 것은 사회적 맥락이다. 여성도 남성도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남성과 여성으로 표시되는 것뿐이다. 성별은 없다. 억압받는, 그리고 억압하는 성별이 있을

뿐이다. 여성은 실체도, 실재도 아닌 지배 규범(‘성역할 사회화’)의 산물이다. 어느 사회에서나 특정한 여성만 여성으로 간주된다. 나이, 인종, 계급, 외모, 직업 등에 따라 여성의 개념은 유동적이다.

세상에는 동성애든 이성애든 커플주의에 문제를 제기하는 무성애자(asexual)도 있고, 기계, 동물, 자연, 우주 등 모든 사물에 성애를 갖는 범성애자(pansexual)도 있다. 섹슈얼리티의 정체성은 선천적일 수도 있고 후천적일 수도 있으며, 본인의 실천과 인지의 차이 등으로 인해 유동적으로 바뀔 수 있다. 이성애는 치밀하게 강제된 제도이므로 그 정도에 따라 동성애자의 비율도 달라진다. 동성애자가 많이 모여 살고 관련 커뮤니티가 발달한 미국의 샌프란시스코는 당연히 동성애자 인구가 많다.

인간의 성적 행위와 이와 관련한 일상에서 사회 규범과 실천의 차이는 (의외로) 매우 크다. 타인의 행동과 자기 행동의 인식도 일관적이지 않다. 특히 섹슈얼리티는 젠더, 연령, 장애, 인종, 계급 등의 사회적 모순에 따라 시민권(membership)의 경계를 규정하고 규율하는 첨예한 정치학이다. 정상적인 성, 아름다운 사랑은 ‘젊은 중산층 이성애자 비장애인 남녀’의 관계에 국한된다. 이를테면 노인, 죄수, 노숙자의 사랑은 ‘독립 영화’의 주제가 된다. 주파일(zoophile, 동물성애자)은 이러한 정상성을 둘러싼 연속선상의 극단에서 자신의 사랑과 정체성을 드러낼 수 없는 사람들이다.

근대 이후 ‘성 역할 공장(factory)’이라고 불렸던 서구 중산층 이성애자 핵가족 이데올로기로 대표되는 ‘남성 생계 부양자’와 ‘여성 가사 노동자’라는 일부일처제 모델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가

죽과 성적 규범의 근간을 이룬다. 동시에 자본주의 등장과 더불어 여성의 취업이 가능해지자 레즈비언들이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물론 레즈비언은 고대부터 존재했지만, 여성의 경제적 독립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민권을 주장할 수 있었다. 이처럼 이성애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젠더와 계급의 이해관계가 개입된 긴 역사를 가진 제도다. 주파일의 가시화와 확산도 사회 제도에 달려 있다. 이성애자도 주파일도 사회적으로 만들어진다.

에로틱의 의미는 계속 재정의되어야 한다. 사랑이나 성애의 상대가 누구든 간에 동등함과 관계성, 인격적 관계가 에로틱한 것이며 이러한 상태(사랑)가 우리를 구원한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주파일은 인간의 사랑 행위 중 일부일 뿐, '동물과 섹스하는 사람'과 동의어가 아니다. 그들의 목적은 섹스가 아니라 동물의 삶을 성의 측면까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레즈비언이 되기로 '선택'한 여성들, 아니, 모든 인간들처럼 주파일을 선택하는 것은 더 나은 삶을 위해서다.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선택한다는 것은 성적 지향에 머무는 일이 아니며,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인생의 중요한 일부다.

이성애자와 주파일 중 누가 더 성과 사회에 고민이 많겠는가. 그런 면에서 주필리아는 여성 노동의 성애화, 여성 섹슈얼리티의 상품화, 만연한 젠더 폭력, 구조적 가해자의 위치에 있는 남성 문화에 대한 강력한 비판이자 새로운 목소리이다.

## 6강

# 동물의 권리와 동물법

## 박주연

사법연수생 시절 우연히 본 사진 한 장을 계기로 동물의 삶과 권리에 관심을 갖게 됐다. 변호사가 된 2012년부터 동물권행동 카라와 함께 동물보호법 개정 활동을 했고, 2017년에는 변호사들의 공익 단체인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을 공동 설립했다. 동료들과 동물권 소송, 입법 제안 등 동물의 권리를 위한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물건이 아니다』, 『동물보호법 강의』 등을 썼다. 반려견 고미, 래미의 집사다.

동물에게도 권리가 있을까? 동물원에 동물을 가두어 두는 건 동물 학대일까 아니면 인간의 즐길 권리에 따라 허용되는 것일까? 왜 개를 먹는 건 금지해야 하는 걸까? 이제 ‘동물권’은 흔히 들리는 용어가 되었지만, 그 뒤에는 다소 복잡한 철학적, 법적 문제들이 숨어 있다. 동물권을 둘러싸고 세계 각국에서 어떠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우리나라에서 동물권 논의와 동물법은 어디까지 와 있는가, 인간과 비인간 동물이 공생하려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인간과 비(非)인간 동물은 늘 함께 살아왔다. 동물은 인간에게 때로는 위협적이고 두려운 대상으로, 때로는 의존하며 서로 돕는 존재로 관계를 형성했다. 나름 수평적이고 균형적이던 동물과 인간의 관계는 점차 인간이 가장 우월한 생물 중이라는 인식과 함께 수직적, 지배적인 관계로 바뀌어 갔다. 특히 서구 사회를 중심으로 동물은 인간을 위한 수단처럼 인식되었고, 철학자 데카르트는 동물을 ‘느끼거나 생각하지 않는 기계’로, 칸트는 ‘인간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도구’로 보았다. 이러한 동물기계론은 살아있는 동물을 각종 실험과 해부에 이용하는 실험과학의 논거가 되었다.

1780년경 철학자이자 법학자인 제러미 벤담은 위와 같은 인식을 비판했다. 공리주의 사상을 전파한 벤담은 “동물도 인간처럼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고, 인간은 그 고통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세기경 과학의 발달로 동물 역시 지능, 감정을 갖고 개체 간 소통과 협업하며 사회적 활동을 한다는 사실이 증명되면서 동물에 대한 인식 변화를 가속시켰다. 벤담의 사상은 1970년대 철학자 피터

싱어에게도 이어졌는데, 싱어는 1975년경 그의 저서 『동물 해방』을 통해 인간의 ‘종차별주의’를 비판하면서 ‘동물의 고통 역시 인간의 고통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여기서 ‘종차별주의’란 인종차별처럼 인간이 동물의 위계를 정하고 비인간 동물을 차별하기 위해 만들어 낸 신념을 의미한다. 위 책은 동물에 대한 인간의 착취-잔혹한 실험, 공장식 축산, 서식지 파괴 등-현실에 반성을 불러일으켰고,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동물권 논의가 활발해지는 데 큰 영향을 주었다. 다만 피터 싱어의 사상은 인간이 동물을 이용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동물‘권리’보다는 ‘복지’론에 가깝다. 이와 비교하여, 톰 리건은 1983년 『동물권 옹호』에서 ‘모든 생명체는 고유의 내재적 가치가 있다’고 하며 이러한 가치를 권리와 연결시켰다. 이에 따라 리건은 ‘인간은 사냥, 식용, 연구, 실험, 반려 등 어떤 명목으로라도 동물을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유네스코(세계 문화/자연유산을 보호하는 UN의 기구)의 1978년 ‘세계 동물권리 선언’에 따르면 동물에 대한 존중은 인간에 대한 존중과 연결되고, 모든 동물은 ‘살아갈 권리’, ‘고통받거나 학대받지 않을 권리’와 같은 기본적인 권리를 가지며, 특히 반려동물은 ‘인간으로부터 적절한 보살핌을 받을 권리’를, 야생동물은 ‘서식지에서 생존, 번식할 권리’를, 실험/축산/사육동물은 ‘휴식할 권리’ 등을 갖는다. 1979년경 영국 농장동물복지위원회는 동물에게 배고픔·영양불량·갈증으로부터의 자유, 불편함으로부터의 자유, 통증·부상·질병으로부터의 자유, 고통과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 본래의 습성에 따라 정상적

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이러한 일명 ‘동물의 5대 자유’는 우리나라 동물보호법(3조)와 같이 많은 나라의 동물법상 기본 원칙이 되었다.

권리, 자유, 이익 등 여러 용어로 표현되지만 결국 모든 살아 있는 존재는 생명의 존엄성에 근거한 생래적 권리를 갖는다는 점을 부정하기 힘들다. 동물에게는 살아갈 권리 즉 생존할 권리, 학대받거나 고통받지 않고 착취당하지 않을 권리, 본래의 습성에 따라 자유롭게 살아갈 권리와 같은 기본적인 권리가 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권리는 법적인 권리와는 구별된다. 동물의 법적 권리를 인정하는 나라는 아직 없다. 그렇지만 동물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법에서 섬세하게 정하는 나라들이 많아지고 있으며, 동물의 법적 지위, 법적 권리를 인정받기 위한 노력과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예컨대, 미국의 동물권변호사단체(NHRP)는 인간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는 인신보호영장 제도(우리나라에 없는 영미법상의 제도)를 통해 열악한 동물원 등에 갇혀 있는 침팬지, 코끼리를 풀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고 있고, 일부 사건에서 ‘침팬지가 (법적으로) 단순한 물건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을 받기도 했다. 아르헨티나 동물권변호사단체(AFADA)는 침팬지 ‘세실리아’를 위한 인신보호영장을 신청했고, 2016년 아르헨티나 멘도사 법원은 세실리아가 ‘자신의 종에 적합한 환경에서 태어나 살고 죽을 기본적인 권리를 지닌 법적 주체’라고 판단했다. 인도는 2013년경 돌고래의 지능적, 감각적 능력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돌고래의 ‘비인간 인격체’로서의 지위와 생명권, 자유로울 권리를 법으로 정했다.

우리는 모든 동물이 각자 고유한 가치를 지닌 개별 주체라는 사실, 또한 모든 척추동물과 많은 무척추동물이 나름의 방식으로 사회를 구성, 인지, 감각하고 인간에게 없는 능력까지 갖고 있으며, 감정을 느끼고 다른 개체와 관계를 맺는다는 사실을 간과 내지 무시하고 있다. 인간만이 우월하다는 인식과 동물에 대한 종 차별, 심지어 같은 종의 동물 내에서도 차별이 이어지는 모습(예: 특정 품종견과 진돗개에 대한 차별, 품종묘와 길고양이에 대한 차별 등)은 우리 사회 곳곳에 숨어 있는 이유 없는 차별, 편가르기, 멸시의 모습과 다를 바 없다.

생명체의 고통을 줄이는 일보다 ‘이윤의 극대화’가 더 중시되는 사회, 약자에 대한 억압과 폭력이 용인, 방관되는 사회에서는 동물뿐 아니라 인간도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어렵다. 국내 한 동물 학대 사건에서 유정우 판사는 이렇게 강조한다. “동물을 보호하고, 동물에 대한 학대를 방지하는 것은 단지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지위에서 갖고 있는 도덕적 의식과 의무감에서 필요한 것을 넘어서서 전체 사회구성원의 존중과 배려 및 보호라는 관점에서 인간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말이다. 동물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은 생명 존중, 다양성의 존중, 권리의 확장, 약자 보호, 환경과 생태계의 보존, 인간의 건강과 안전, 우리 사회의 보호 가치 설정의 문제와 맞닿아 있다. 즉 동물만을 위한 것이 아닌, 인간과 모든 생물에 더 이로운 결과를 가져오기 위한 일이다.

이처럼 동물의 권리와 인간의 권리는 양자택일의 문제나 대립 관계가 아니다. 그럼에도 종종 ‘동물의 권리를 보호하면 인간의 권리가 침해된다’는 선입견, 반감에 부딪힌다. 우선 생각해 볼 문제는 인

간에게 동물을 이용할 '권리'가 있느냐 하는 것이다. 동물을 이용, 착취하는 '현실'이 인간에게 그렇게 할 권리를 부여한다고 볼 수 있을까? 설령 인간에게 동물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에 동물을 '어떻게 이용해도 좋을'(마음대로 가두거나 때리고 고통을 주고 죽일) 권리까지 포함되는 것일까?

인간에게 동물을 마음대로 이용할 권리가 있지 않다는 점에서, 설령 인간에게 그러한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 범위가 무한정은 아니라는 점에서(실상 인간의 권리는 그에 충돌하는 다른 가치의 보호를 위해 제한될 수 있다. 예: 아동의 복리를 위한 부모의 친권 제한, 건전한 사회 풍속을 위한 도박죄 규정 등. '동물의 생명보호'도 동물보호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엄연한 보호가치이다) 인간의 동물 이용, 권리 침해는 최소화되어야 한다. 불필요한 동물 이용은 중단되어야 하고, 필요한 경우라도 덜 이용하고 고통을 덜 주는 방식으로 이용해야 한다.

그런데 어디까지가 '필요한 이용'인지 등의 문제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다. 여기서 적용해 보고자 하는 하나의 기준이 헌법상 비례의 원칙이나 과잉 금지의 원칙이다. 이 원칙은 어떠한 권리를 제한할 때 네 가지 요건, 즉 그 목적이 정당한지, 방법이 적합한지, 최소한도로 침해하는지, 침해되는 이익보다 보호되는 이익이 더 우선하는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물원의 경우에 이 원칙을 대입해 보면, 인간의 생존과 무관한, 즐길 권리와 같은 이익을 위해 본래 서식지에서 살아가던 야생동물을 일생 가두어 두고 고통을 주는 것은 비례의 원칙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다.

이제 동물을 둘러싼 우리나라 현실에 대해 더 자세히 들여다보자.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은 1988년 서울올림픽대회 개최가 계기가 되어 1991년에 최초로 만들어졌는데 당시 명목적, 형식적으로 제정되어서 전체 조항 수가 12개에 불과하고 내용도 많이 부실했다. 2000년대 들어오면서 동물 반려 인구가 크게 늘었고 동물권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성장해 왔다. 동물보호법은 크고 작은 개정을 거치며 현재 101개 조항에 이르게 되었고 내용에도 상당한 발전이 있었다.

그럼에도 동물의 법적 지위는 아직 유체물에 불과하고, 현실에서도 인간을 위한 수단이나 물건처럼 취급되고 있다. 동물들은 번식장, 펫숍, 보호소에서, 동물원, 축제, 전시/체험 공간에서, 농장과 실험실에서 끔찍한 고통에 시달린다. 법은 여전히 동물을 보호하기에 부족하고, 학대를 예방하기도 어렵다. 동물을 구해내더라도 구조한 동물이 머무를 보호시설이 없다. 법에 규정된 내용이 잘 단속, 적용되지도 않는다.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은 경각심을 주지 못할 정도로 가볍고, 동물이 소송에서 자신의 고유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려는 새로운 시도들은 번번이 실패했다.

우선 법의 변화가 필요하다. 법은 동물에 ‘고통을 주지 않는 것’에서 나아가 그 동물이 ‘본래의 습성에 맞게 자연스럽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넓히고 학대가 예방될 수 있도록 소유권 제한, 몰수 등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불필요한 안락사, 동물실험, 동물생산/판매/전시 영업을 규제하는 것도 필요하다.

특히 동물은 종별, 개체별로 다르며, 각자 편안하게 살아가는

방식이 있음을 인식, 연구하고 이를 법에 구체적으로 반영할수록 좋다. 동물보호법과 축산법, 동물원법 등에 최소한 '종별 복지 기준'을 정하고 보호자/영업자에게 따르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국내 최고규범인 헌법에서 '동물보호'라는 가치를 명시적으로 선언한다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에 구체적인 동물보호 의무를 부여할 수 있다. 민법상 동물의 법적 지위 변화도 필요하다.

법적 변화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동물의 권리 보호를 사회의 주요 가치로 당연히 받아들이고 지키려는 사회 인식이다. 그러한 사회로 나아가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동물을 둘러싼 현실과 문제점을 인식하고 함께 고민하며, 개선을 위한 목소리를 내거나 행동할 필요가 있다. 개인이 할 수 있는 일들은 많다. 문제를 알리는 것, 동물을 '구입'하지 않고 '입양'하는 것, 동물을 착취한 제품/식품을 구매하지 않거나 줄이는 것,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는 것, 법의 제/개정을 요구하거나 발의된 개정안에 찬성 의견을 게시하는 것, 동물권에 대한 기사나 책을 읽고 주변 사람들과 얘기해 보는 것 등 각자의 방식으로 이 사회를 더 이롭게 할 방법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동물을 위한 정의』를 쓴 윤리학자 마사 누스바움의 말처럼, '좋은 사회를 논하는 데 있어 동물을 빼놓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며, 동물학자 제인 구달이 『희망의 이유』에서 말했듯, '우리들 각자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 7강

# 노예, 권리를 빼앗긴 자들의 투쟁

## 권윤경

서울대학교 서양사학과에서 학사와 석사를 마친 후 미국 시카고대학교에서 역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서울대학교 역사학부 서양사전공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근대 프랑스사 전공으로 주로 프랑스 식민주의, 대서양 노예제와 노예제폐지운동, 프랑스혁명과 아이티혁명, 근대 인종주의, 기억의 정치, 탈식민주의 등을 연구한다. 공저로 『France's Lost Empires』(2010), 『Abolitionist Places』(2013), 『전쟁과 프랑스 사회의 변동』(2017), 『정치사상사 속 제국』(2018), 『세계 디지털 인문학의 현황과 전망』(2019), 『19세기 히스토리』(2022), 『프랑스를 만든 나날, 역사와 기억 1』(2023) 등과 번역서로 『모두의 바람』(2022)이 있다.

18세기 후반 유럽, 계몽주의와 혁명의 시대에 권리의 담론은 자유를 정의하고 정치체를 재구성하는 원리로 부상했다. 이때 권리 개념에 무엇보다 큰 힘을 부여한 것은 권리는 ‘보편적(universal)’이라는 사실이었다. 구체제 사회에서는 신분제가 사회의 기본 원리로 작동했고, 프랑스처럼 상대적으로 중앙집권화된 왕국에서도 법과 제도는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았다. 신분뿐 아니라 지역, 도시, 동업조합 등 모든 공동체가 서로 다른 권리와 의무를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권리는 보편적이고 모든 인간은 자연으로부터 부여받은 자연권을 가진다’는 생각은 기존 사회 체제를 개혁하려던 이들에게 강력한 지적 무기가 되어주었다. 그러나 인간은 보편적 권리를 가진다는 이론은 결코 문자 그대로 적용될 수 없었다. 프랑스 대혁명으로 신분제가 타도되고 ‘모든 시민은 법 앞에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 새로운 시민권의 정수로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이하 「인권선언」)에 새겨진 후에도 사회를 가르는 새로운 구분선-재산, 직업, 성별, 교육, 국적, 인종 등등-이 권리를 조각내었다.

권리, 특히 참정권과 같이 정치체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려면 일정 ‘자격(entitlement)’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시민권은 보편적이라는 생각과 대립했다. 대표적으로 혁명 당시에도 일정 수준 이상의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남성들은 ‘수동 시민(citoyens passifs)’으로 분류되어 참정권을 박탈당했고, 여성은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성별로 인해 통째로 참정권을 부정당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백인(소위 유색인)이나 식민지 노예들에게도 같은 권리가 있다는 생각은 당사자들이 직접 요구하기 전까지는 문젯거리가 되

지도 못했다. 혁명의 시대 이후 역사는 새로운 권리의 계서제를 보전 하려는 사람들과 권리의 보편성을 무기로 억압에 저항하는 이들 사이의 투쟁으로 점철되었다.

권리를 둘러싼 이러한 투쟁을 그럴 때 우리는 보통 새로운 권리 개념을 입안한 유럽과 미국의 사상가나 운동가들을 부각하기 쉽다. 그러나 교육받지 못한 농민, 수공업자, 일용 노동자, 여성들 역시 권리 개념을 자신의 것으로 전유하고 전통적인 저항의 방식과 결합 하여 새롭게 사회적 투쟁에 뛰어들었다. 혁명의 시대에 권리 개념의 보편성과 그 한계, 그리고 이를 이용해 기존 체제를 전복시키는 투쟁이 가장 극적으로 벌어진 곳은 다름 아니라 대서양 건너편에 있던 아메리카의 식민지였다. 물론 1776년 시작된 미국의 독립 혁명이 새로운 권리 이념을 설파하고 혁명의 시대에 불을 붙인 것은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강의에서 주목하려는 것은 오랫동안 세계 혁명사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아이티혁명이다. 계몽 시대의 아이러니는 파리의 철학자들이 카페에서 자연권을 논하며 마시던 커피와 설탕이 인권 일체를 부정당하고 재산으로 취급되던 아프리카 노예들의 피땀으로 재배되었다는 사실이다.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실어와 아메리카 식민지에서 부리는 대서양 노예제는 18세기 후반 번영의 절정에 달했다. 노예는 아메리카 경제의 모든 부문에 투입되었지만, 가장 수익성이 높은 것은 대규모 노예 노동력을 투입하여 대농장에서 상품 작물을 대규모로 생산한 후 유럽에 파는 것이었다. 덕분에 원래 사치품이었던 설탕은 18세기

후반이면 영국과 프랑스 등지에서는 일상적인 식품이 되었다. 특히 카리브해의 섬들은 '설탕섬'으로 불릴 정도로 설탕 생산에 특화되어 있었다.

그중 가장 부유한 섬이 바로 아이티혁명의 무대인 프랑스로 생도맹그(Saint-Domingue)였다. 생도맹그가 위치한 히스파니올라섬은 원래 에스파냐령 산토 도밍고(Santo-Domingo)였는데, 나중에 프랑스가 섬의 서쪽 3분의 1을 양도받아 프랑스 영토가 되었다. 오늘날에도 동쪽은 스페인어권인 도미니카 공화국, 서쪽은 과거 생도맹그였던 아이티다.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불리는 이 섬은 당시에는 대서양 경제의 핵심부였다. 이 섬은 유럽 설탕과 커피 소비량의 거의 절반을 생산했고, 생도맹그와의 무역은 프랑스 해외 무역량의 40%를 차지했다.

그러나 1770~1780년대에 설탕 가격이 계속 오르자 호황에 취한 생도맹그 농장주들이 흑인 노예 수입을 계속 늘리면서 섬은 극단적인 인구 불균형 상태에 빠졌다. 1789년 이 섬의 백인 인구는 3만~3만 5천 명가량, 백인과 유색인 사이에서 태어난 자유민 유색인이 2만 5천에서 3만, 그리고 흑인 노예가 45~50만 명이었다. 당시 북아메리카 전체 노예 인구가 70만 명 정도였음을 보면 이 섬의 노예제 경제 규모가 얼마나 컸는지 가늠해 볼 수 있다. 생도맹그 노예 인구 중 대수는 식민지 노예들 사이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아프리카에서 태어나 노예로 팔려 온 사람들이었다.

본국에서 프랑스혁명이 일어나자 위태로운 균형 위에서 있던 생도

맹그는 격변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었다. 섬을 지배하던 백인 농장주 계급은 혁명과와 반혁명과로 분열했고, 피부색 때문에 차별받던 자유민 유색인 부르주아도 프랑스의 혁명의회에서 로비 활동을 펼치며 백인들과 같은 시민권을 요구했다. 그 결과 섬은 주인계급 사이의 내전 상태로 빠져들었고, 이들 사이의 분열은 인구 대다수를 차지한 노예들에게 기회를 주었다. 1791년 8월 22일, 설탕 대농장이 집중되어 있던 생도맹그 북부에서 대규모 노예 반란이 벌어져 대농장이 불타고 백인들이 학살당했다. 노예 반란은 급속도로 섬 전체로 퍼져나갔고, 여기저기서 무장한 흑인 노예들로 이루어진 반란군이 나타나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했다.

본국과 식민지 사이의 거리 때문에 몇 달 후에 소식을 접한 혁명의회는 혼란에 빠졌다. 재산 자격을 충족하는 자유민 유색인들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문제로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던 의회는 그동안 열등한 존재로 생각하던 흑인 노예들이 이렇게 조직적으로 대규모 반란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이에 따라 뉴스의 진위여부나 ‘배후’에 누가 있는지를 두고 격론이 벌어졌다. 파리에서 로비를 벌이던 생도맹그 농장주들은 프랑스의 반노예제 조직이던 ‘흑인우호협회(Société des amis des Noirs)’와 자유 유색인들을 배후로 꼽았다. 반면 급진 자코뱅 혁명가 일부는 그들이 프랑스혁명의 인권 사상에 감화되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프랑스혁명 진과설’은 그 후로도 서구인들 사이에 정설로 남았다. 그러나 흑인 노예들이 서구의 영향력 아래에서만 자유를 상상할 수 있었다는 생각은 서구중심적인 편견에 불과하다. 최근 진행된 많은 연구는 대부분 문맹이고 지능

이 모자란 야만인 취급을 당했던 노예들이 실상 수 세기에 걸친 가열 찬 저항의 전통 위에서, 그리고 아프리카, 아메리카, 유럽 3개 대륙에서 발원한 실로 다양한 자유와 권리의 레퍼토리를 활용하여 자신들의 해방을 요구했음을 밝혀내고 있다.

노예제의 역사는 실상 이에 대한 저항의 역사로 점철되었다. 생도맹그뿐만 아니라 인근의 자메이카를 비롯하여 광범위한 노예제 지대에서 크게는 무장봉기에서 작게는 일상 속의 사보타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저항이 나타났다. 잘 알려진 저항의 예는 마룬(maroon)이라 불리는 도망 노예들로서 식민지의 광대한 배후지(주로 험준한 산악지대)로 도망간 노예들은 자신들만의 공동체를 만들어 식민지 사회와 대로는 대립하고 때로는 교섭하며 살아갔다. 또한 노예들의 저항적 삶과 공동체 만들기에 큰 기여를 한 것은 그들이 만들어낸 독특한 혼종적 종교였다. 생도맹그에서는 아프리카 종교, 기독교, 아메리카의 토착 신앙이 섞여 부두교(vodou 혹은 voodoo 등 다양하게 표기)라 불리는 새로운 신앙이 나타났다. 부두교는 비밀 회합과 사제들을 통해 노예들에게 자유에 대한 열망과 섬을 아우르는 넓은 조직망을 제공했다.

특히 많은 연구자들이 주목한 것은 “흑인 공론장(black public sphere)”의 존재다. 하버마스가 말한 공론장이 유럽의 인쇄문화 속에서만이 아니라 구술문화가 중심이 되는 아메리카의 노예와 유색인 사이에서도 존재했다는 것이다. 혁명 전부터 신세계에서는 대서양 무역과 아메리카 내의 무역 경로를 따라 이동하는 바닷사람들이 여

기저기로 뉴스를 퍼 날랐다. 제국의 경계들을 넘나드는 상인, 선원, 도망노예들은 유럽과 다른 식민지의 뉴스를 빠른 속도로 전파했다.

노예들은 대부분 문맹이었지만 혁명의 시대에 유행한 작은 팸플릿들은 글을 아는 이들에 의해 구술의 장으로 널리 퍼져갔다. 노예들은 이 뉴스를 자신들의 방식으로 재해석하여 퍼뜨렸다. 영국의 의회에서 노예무역 폐지 관련 법안이 논의 중이라거나 에스파냐 국왕이 노예의 처우를 개선하는 왕령을 선포했다는 뉴스가 전해지면 이는 얼마 안 있어 이미 국왕이 노예를 해방했는데 농장주들이 숨기고 있다는 루머로 변해 퍼져 나갔다. 이러한 “기대의 문화(culture of expectation)”는 프랑스혁명이 도래하자 폭발적인 파괴력을 보이게 된다.

이렇게 준비된 토양 위에서 프랑스혁명이 일어나자 생도맹그의 노예들은 상상할 수 없이 빠른 속도로 “혁명가”로 변신했다. 애초에 프랑스의 혁명가들은 혁명을 식민지에 전파할 생각이 없었고, 오히려 새로운 사상이 식민지에 혼란을 초래할까 매우 조심스러웠다. 당시 프랑스에서 노예제 문제에 가장 급진적인 반대파조차 노예무역을 폐지하거나 일부 자유민 유색인들에게 참정권을 주는 정도밖에 생각하지 못했다.

그러나 혁명의 뉴스와 「인권선언」을 비롯한 혁명 관련 팸플릿들이 식민지에 도착하자 생도맹그의 노예들은 이를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다양하게 해석했다. 누군가는 혁명을 프랑스의 백인 노예들이 주인을 타도한 것으로 이해했고, 누군가는 국왕과의 회회가 이미 노

예해방을 선포했다고 생각했으며, 많은 이들은 「인권선언」의 문장을 자구 그대로 해석했다. 인간은 모두가 평등하고 자유롭다면 노예들 역시 그러하다는 것이다. 모두를 놀라게 한 1791년의 대반란은 이 모든 다양한 요소들, 즉 혁명으로 인한 지배계급 사이의 내전이 만들어 낸 전략적 기회, 도망노예와 봉기의 전통, 부두교의 조직망과 신앙, 노예로 팔려온 아프리카 전사들의 전투력, 그리고 프랑스혁명이 선포한 자유와 평등사상이 결합한 결과였다.

그 결과 1793년 무렵 생도맹그의 상황은 극도로 혼란스러웠다. 프랑스 본국에서는 혁명이 점차 급진화되어 1792년 왕정을 폐지하고 공화국을 선포하는 한편 유럽의 왕국들과 혁명전쟁에 돌입했다. 혁명전쟁은 곧 식민지로 확대되었다. 예전부터 생도맹그를 호시탐탐 노리던 영국이 바다로부터 침공하고, 국경을 맞댄 에스파냐도 생도맹그 일부 지역을 점령했다. 이제 프랑스 공화국은 공화국에 반대하는 식민지의 반혁명세력, 노예 반란군, 영국과 에스파냐의 점령군에 둘러싸여 간신히 버티는 상황이었다. 여기서 공화국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당시 프랑스 혁명정부는 송토나(Léger-Félicité Sonthonax)를 비롯한 몇 명의 관무관을 정부의 대리인으로 섬에 파견했다. 이들은 혁명에 끌어들이 수 있는 유일한 대규모 무장세력, 즉 흑인 노예의 충성을 확보하여 상황을 타개하고자 했다. 송토나는 이를 위해 1793년 8월 선제적으로 생도맹그에 전면적인 노예해방령을 선포했다.

이후 관무관들은 이러한 비상조치의 승인을 위해 백인, 유색인, 해방노예로 이루어진 상징적인 대표단을 프랑스에 보냈고, 이들

은 다음 해 2월 나란히 혁명의회에 입성했다. 당시 프랑스혁명은 로베스피에르가 이끄는 국민공회로 대표되는 가장 급진적인 국면에 접어들어 있었다. 국민공회는 노예군을 활용해 해상에서 외국 침략군을 타도할 실용적 필요성과 평등주의적 열정 양쪽에 고무되었다. 결국 의회는 생도맹그 노예해방령을 승인하는 것을 넘어 프랑스의 모든 식민지의 노예들에게 자유와 평등한 시민권을 부여하는 ‘우월(雨月) 16일의 법’을 표결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급진화한 본국 혁명과 식민지의 노예 반란 사이에 동반 상승효과가 발생하여 유럽 역사상 유례없는 전면적인 무조건 노예제 폐지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는 당시 프랑스 본국이 식민지에 대한 통제력을 사실상 상실한 상태였고, 백인 농장주 대부분이 반혁명파라 노예제폐지에 대한 보상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 사이 생도맹그에서는 “흑인 스파르타쿠스”라고 불리게 될 해방노예들의 지도자가 나타났다. 아프리카인 노예 사이에서 태어난 해방노예였던 투생(Toussaint)은 1791년 대반란 이후 반란군에게 합류했다가 에스파냐 측에 붙었다. 사실 아이티혁명 초반까지만 해도 모든 반란노예가 노예해방의 대의를 지지한 것은 아니었다. 아직 전면적인 사회 변화를 상상하기 어렵던 때라 반란 노예들이 요구한 것은 보통 자기 소속 집단의 해방이나 노동시간 감축, 주말 노동에 대한 임금 지급 등의 처우개선 등이었고, 투생이 속한 반군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를 변화시킨 것은 에스파냐와 달리 혁명 프랑스가 노예제 폐지를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이때부터 자신을 투생 루베

르튀르(Toussaint Louverture)로 칭하며 혁명의 대의에 지지를 표했으며, 1794년 노예해방령의 소식이 섬에 전해지자 프랑스 공화국 쪽으로 전향했다. 생도맹그에서 위태롭게 흔들리던 공화국과 노예해방의 대의는 결출한 군사적 지도자를 만나며 기세를 올리기 시작했다. 투쟁은 노예해방에 반대하는 강력한 적들, 즉 영국군, 에스파냐군, 프랑스의 백인 반혁명파, 그리고 그와 경쟁하는 자유민 유색인 세력을 차례로 물리치고 섬의 실질적 지배자로 부상했다.

이윽고 투쟁은 프랑스 본국과도 싸워야 했다. 1794년 2월 노예해방령은 아이티혁명의 완성이 아니라 한 번곡점에 불과했다. 1794년 여름 프랑스에서 테르미도르 반동이 일어나면서 본국 혁명이 보수화하기 시작했고, 노예해방에 반대하는 친 농장주파들이 복권했다. 이윽고 1799년 프랑스에서는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쿠데타를 일으키며 사실상 혁명이 종말을 맞았다. 나폴레옹은 식민지의 존재 이유는 본국에 열대 상품을 공급하는 것이므로 노예해방은 프랑스에 전혀 수지맞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반면 투쟁은 프랑스를 향해 흑인들은 백인과 마찬가지로 동등한 인간이고, 이들이 교육받지 못했다고 인간의 권리를 부인당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으며, 흑인들의 자연권을 빼앗고 노예제를 복구하려는 일체의 시도는 식민지를 잿더미로 만들리라 경고했다. 게다가 그는 1801년 생도맹그 헌법을 포고하여 노예해방은 결코 번복될 수 없는 인민의 권리라고 재확인했다. 이 헌법을 생도맹그 독립 선언서라고 간주한 나폴레옹은 1801년 노예해방을 번복하기 위해 생도맹그에 대규모의 원정군을 보냈다. 그리하여 아이티혁명의 가장 참혹

한 국면인 아이티 독립전쟁이 시작되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 출신의 역사가 제임스(C. L. R. James)는 이를 두고 가장 극적인 혁명의 서사라고 평했다. 혁명을 통해 다시 태어난 흑인 노예들이 이제 보편적 인권을 거부하는 프랑스 본국에 대항하여 혁명 이념을 수호하게 된 것이다.

당시 유럽에서 무적으로 통했던 나폴레옹군이 해방노예들을 제압하지 못하리라 짐친 사람은 거의 없었다. 과연 생도맹그 원정군 사령관 르클레르(Charles Leclerc) 장군은 초반에 투생 군대 내의 분열을 이용하여 결국 그의 항복을 받아냈다. 프랑스의 감옥으로 압송된 투생은 추위와 질병에 시달리다 1803년 숨을 거뒀다. 이렇게 투생의 삶은 비극으로 끝났지만 생도맹그에서는 새로운 지도자들이 나서 전쟁을 계속했다.

프랑스군은 투생과 몇몇 흑인 장군만 없다면 생도맹그 인민을 다시 복속시킬 수 있으리라 기대했으나 이는 완전한 오판이었다. 한번 자유를 경험한 이들에게 이제 혁명은 문자 그대로 “자유 아니면 죽음”의 문제가 되었고, 생도맹그의 전 인민이 결사항전에 나섰다. 새로운 군사 지도자가 된 데살린(Jean-Jacques Dessalines)은 결국 프랑스군을 패퇴시키고 1804년 생도맹그의 독립을 선언했다. 프랑스를 증오했던 데살린은 식민 모국과 완전히 인연을 끊는다는 의미에서 국명을 원래 선주민들이 부르던 섬 이름을 따라 아이티(Haïti)로 바꾸었다. 프랑스의 다른 식민지에서는 노예제가 복구되었지만, 아이티에서는 아메리카 최초로 반식민주의, 반인종주의, 노예해방을 선언

한 흑인 독립국이 탄생했다.

그러나 아이티혁명이 재창조한 보편적 인권 내에서도 불협화음이 일었다. 투쟁의 체제와 뒤를 이은 아이티의 다양한 정부들은 공통의 문제에 직면했다. 생도맹그를 비롯한 카리브해 식민지는 열대 작물 단일경작 재배에 특화되었기에 식량을 포함하여 모든 물자를 수입해야 했다. 당장 대농장에서 설탕이 생산되지 않으면 식량도 탄약도 살 수 없었다. 따라서 대농장 경제를 유지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해방된 노예들을 임금 노동자로 전환해 대농장에 묶어 놓아야 한다는 것이 모든 지배층의 공통된 판단이었다.

하지만 해방노예들은 노예제를 연상시키는 대농장에 속박되려 하지 않았다. 해방노예 대부분의 희망은 작더라도 자신의 땅을 경작하는 자영농이 되는 것이었다. 그들은 버려진 땅과 언덕을 개간했고, 대농장의 토지를 분할하여 소유할 권리를 요구하기도 했다. 혁명기 프랑스 인민들과 마찬가지로 해방노예들에게 토지를 돌려싼 사회경제적 권리는 시민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어야 했다. 그리하여 이제 투쟁을 비롯한 아이티의 지도자들은 보편적 자유의 대의를 위해 인민의 노동권과 이동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역설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그들은 노동의 미덕을 설파하며 부랑자나 노동 기피자를 엄격하게 처벌했고, 그들이 소규모 토지를 매입하거나 대농장을 떠나는 것을 규제했다.

이러한 상황은 1848년 2월혁명 이후 수립된 프랑스의 제2공화정이 마침내 노예제를 최종적으로 폐지했을 때 식민지에서 비슷한 형태로 되풀이되었다. 혁명에 적극 가담한 파리의 노동자들은 2월혁

명에 성공한 직후 '노동권'을 보편적인 권리로 천명했다. 그들은 노동시간 단축, 조합설립권, 실업자 구제책 등을 통해 노동자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것이 남성 보통선거제로 보편화된 참정권을 비롯한 다른 권리를 완전하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노예제 폐지 후 마르티니크, 과들루프, 레위니옹 등 프랑스 식민지에서 노동은 권리가 아니라 의무로 강제되었다.

노예들은 이제 제2공화국의 법에 따라 해방되고 동등한 프랑스 시민이 되어 투표까지 할 수 있었지만 정작 그들의 노동권은 제약되었다. 새 정부는 억압적인 노동 체제를 통해 해방노예들을 대농장에 결박하여 상품작물 생산 체제를 유지하고자 했다. 게다가 프랑스 정부는 노예제를 폐지하면서 평생 인권을 유린당한 노예가 아니라 노예소유주에게 거액의 배상금을 지불했다. 노예의 인권보다는 노예라는 자산에 대한 재산권이 중요시되었기 때문이다. 인간의 권리는 보편적이라고 천명될지언정 시민권, 재산권, 노동권은 본국과 식민지에서 여러 방향으로 갈등을 빚었다.

1989년 프랑스혁명 2백 주년 당시 프랑스는 혁명을 “인권혁명”으로 재발명하고자 했다. 혁명 기념식에서는 미국의 흑인 성악가 제시 노먼(Jessy Norman)이 삼색기를 몸에 휘감고 혁명가이자 애국가인 ‘라 마르세예즈’를 불렀고, 유대인 해방과 노예무역 폐지를 주장한 그레구아르 신부(Abbé Grégoire)가 공화국의 위인들이 묻힌 팡테옹에 입성했다. 혁명기 ‘인간의 권리’와 오늘날 ‘인권(human rights)’ 사이 개념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1794년의 노예해방령은 당시의 역사적 맥락에서 뚝 떨어져나와 프랑스혁명이 보편적 인권을 수호한

증거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혁명기 자유와 권리는 결코 이렇게 매끄러운 서사로 정리될 수 없고, 권리는 결코 보편적으로 구현되지 않았다. 시대착오성을 무릅쓰고 프랑스혁명을 인권혁명으로 정의한다면 인권의 보편성을 진정으로 구현한 것은 흑인 노예들의 창과 피였음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 유럽과 미국에서 노예제의 기억이 치열하게 부상하는 이유 중 하나는 그것이 현재 글로벌 자본주의의 참혹한 노동 현실과 인종화된 노동 체제를 새롭게 돌아보게 만들기 때문이다. 권리를 등대 삼아 역사의 파고를 뚫고 나아가려던 많은 이들의 투쟁과 패배를 다시금 기억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한다.

## 8강

# 로봇의 권리, 인간의 자리

### 전치형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대학원 '과학사 및 과학철학 협동과정'에서 공부했다. 미국 MIT에서 과학기술사회론(STS)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독일 막스플랑크 과학사 연구소에서 박사후연구원 과정을 밟았다. 현재 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대학원에서 인간과 테크놀로지의 관계, 정치와 엔지니어링의 얽힘, 로봇과 시뮬레이션의 문화에 관심을 갖고 연구와 저술 활동을 하고 있다. 과학잡지 『에피』의 편집주간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사람의 자리』, 『로봇의 자리』, 『미래는 오지 않는다』(공저), 『호흡공동체』(공저) 등을 썼다.

로봇에게 권리가 있다니, 혹은 권리가 있을 수도 있다니, 혹은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니, 그게 무슨 말인가. 그저 소설과 영화 속 설정 정도로만 들리는 이런 질문을 학술적으로 논하려는 시도가 없지 않다. 사람들이 로봇에게 어느 정도까지 권리를 부여할 의향이 있는지 설문과 분석을 하기도 하고, 인간과 물건 사이에서 로봇의 지위를 어떻게 설정할 수 있을지 철학적으로 고찰하기도 한다.

이 강연에서 나는 로봇에게 권리가 있다/없다, 혹은 권리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없다는 입장을 취하지는 않는다. 또 ‘권리’에 관한 정확한 법적, 철학적 정의를 활용하여 로봇의 권리를 논하지도 않을 것이다. 대신 나는 ‘권리’라는 말을 매우 넓고 느슨하게 해석하여, 로봇이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즉 사회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어떤 존재로 인식되고 있는지,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지 생각해 보려 한다.

로봇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또는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가. 로봇은 무엇/누구보다 낫거나 못한 존재인가. 로봇이 할 수 있는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을 규정하려는 시도 중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아이작 아시모프의 소설에 등장하는 ‘로봇 3원칙’(three laws of robotics)이다.

첫째, “로봇은 인간에게 해를 가하거나, 부작용을 통해 인간이 해를 입도록 두어서는 안 된다.” 둘째, “제1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로봇은 인간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 셋째, “제1원칙과 2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로봇은 자기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

로봇공학계와 SF 문학계 모두에 널리 알려져 있는 이 원칙들은 1940년대에 출판된 아시모프의 소설 속 장치이며, 현실의 로봇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인간-로봇 관계를 설계해야 하는 로봇공학자나 로봇 관련 윤리 문제를 고민하는 학자는 누구나 이 3원칙을 언급하고 여기에서 영감을 얻는다. 이때 우리는 로봇을 어떤 존재로 상상하고 있는가. 이러한 원칙을 통해 규정되는 관계는 과연 현실에서—사람과 사람 사이이든, 사람과 로봇 사이이든—구현될 수 있는가.

시간을 약간 거슬러 1920년대로 가면 로봇의 지위와 권리에 관한 초기 상상을 엿볼 수 있다. ‘로봇’이라는 말을 처음 도입한 것으로 유명한 카렐 차페크의 1920년 희곡 <R.U.R. 로쭈 유니버설 로봇>은 로봇을 인간 고용주 아래에서 일하는 노동자로 그린다.

극의 첫머리에서 로봇들이 일하는 공장을 방문하는 헬레나 글로리오바는 로봇의 권리를 옹호하는 활동을 펼치는 ‘인권연맹’ 소속이다. 그는 로봇을 인간과 동등한 존재로 여기고 로봇에게 더 나은 노동조건과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로봇 회사를 운영하는 도민은 로봇이 값싸게 제작한 ‘인조 노동자’일 뿐이며, 로봇에게는 노동에 불필요한 영혼 같은 것이 없으므로 로봇은 절대 인간과 동등할 수 없다고 믿는다. “친애하는 글로리오바 양, 로봇은 사람이 아니죠. 기계적으로는 그들이 우리보다 완벽합니다. 또 깜짝 놀랄 만한 지적 능력도 갖고 있죠. 하지만 그들에게 영혼이 없습니다.”

차페크의 희곡에서 로봇은 한눈에 구별하기 어려울 만큼 인간

과 비슷한 외양, 어느 인간에 못지 않은 신체적, 지적 역량을 가지고 있으나, 인간을 인간이게 하는 영혼을 결여하고 있다는 이유로 온전한 인간에 못 미치는 존재, 따라서 인간과 같은 권리를 가지기는 어려운 존재로 묘사된다. 반면 실제로 개발되고 활용되는 로봇 중에서는 신체적, 지적 역량보다는 그 외양이 인간과 매우 흡사하다는 이유로 인간처럼 대접받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다.

헨슨 로보틱스사에서 얼굴 부분을 매우 정교하게 디자인하여 개발한 로봇 ‘소피아’는 2017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명예 시민권을 받았다고 알려졌다. 2018년 소피아는 한국을 ‘방문’해서 한 국회의원과 나란히 앉아 ‘4차 산업혁명’의 미래를 논할 정도로 인간 대접을 받았다. 우리는 그저 인간과 비슷하게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로봇을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할 만큼 관대하다.

소피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얼마나 인간처럼 생겼느냐’ 하는 것은 로봇을 대하는 인간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척도로 작용한다. 일본의 로봇공학자 모리 마사히로는 ‘불쾌한 골짜기’(uncanny valley)라는 개념을 통해 로봇의 외양이 점점 인간에 가까워질 때 로봇에 대한 우리의 친밀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관한 가설을 제안한 바 있다. 로봇의 외양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건강한 사람의 외양에 가까울수록 우리는 대체로 그 로봇을 가깝게 느낀다.

그러나 그 유사성이 매우 높은 어느 지점에 이르면 갑자기 깊은 계곡에 빠지는 것처럼 친밀도가 급락한다. 로봇이 인간과 매우 유

사하지만 아직 똑같은지는 않은 구간에서 우리는 모종의 불쾌함이나 섬뜩함을 느낀다는 것이다. ‘불쾌한 골짜기’가 과연 실재하는지, 더 나은 디자인을 통해 그 골짜기를 넘어설 수 있는지 확실하게 결론 내릴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가 특정한 상태의 인간을 잣대로 삼아 로봇을 분류하고, 평가하고, 그에 걸맞은 지위를 부여하려 한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인간의 팔 모양을 본뜬 로봇이 알고리즘에 따라 공장에서 생산 활동을 하는 것과 인간의 얼굴을 본뜬 로봇이 알고리즘에 따라 무대에서 인간과 대화를 나누는 것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로봇에게 권리가 있다거나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고 말할 때 우리는 어떤 로봇을 염두에 두고 있는가.

로봇의 권리를 생각할 때 우리는 명확한 개념이나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인간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생겼으며, 어떤 일을 하면서 어떤 역량을 발휘해야 하는지에 관한 우리의 생각을 그때그때 눈앞에 있는 로봇에게 적용한다. 어떤 로봇은 인간처럼 생각하고 움직인다는 이유로 인간 대접을 받고, 어떤 로봇은 인간처럼 생겼다는 이유로 인간 대접을 받는다. 인간 대접을 받는 로봇이 늘어나는 것은 인간 대접을 받는 인간이 늘어나도록 하는 일에도 도움이 될 것인가.